

잡

LAW SCHOOL

미 래 의 희 망 로 스 쿨

2020. MAY + JUN



- KNU 강원대학교
- 건국대학교
- 경북대학교
- 경희대학교
- 고려대학교
- 동아대학교
- 부산대학교
- 서강대학교
- 서울대학교
- 서울시립대학교
- 성균관대학교
- 아주대학교
- 연세대학교
- 영남대학교
- 원광대학교
- 이화여자대학교
- 인하대학교
- 전남대학교
- 전북대학교
- 제주대학교
- CAU 중앙대학교
- 충남대학교
- 충북대학교
- 한국외국어대학교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THE ASSOCIATION OF KOREAN LAW SCHOOLS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

MAN WHO HAS HAD A DREAM FOR A LONG TIME
WILL FINALLY GET LOOKED LIKE THE DREAM.

앙드레 말로
(Andre Malraux)



Contents



- 004 **special report**
- 018 **hot issue**
- 020 **power interview**
전승재 변호사
- 024 **letter from**
최지호 변호사
조승연 변호사
- 030 **real story**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민정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유영훈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양필구
- 036 **contest**
제9회 동천 공익·인권 프로그램 제안대회
- 040 **happy lawschool**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1기 김서래
- 044 **opinion**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박성우 교수
정문정 작가
- 050 **article**
- 051 **book**
- 052 **health mentoring**
- 054 **movie talk talk**
- 058 **culture**
- 060 **akls news**
- 062 **out campus**
- 063 **quiz**

2020. may + jun

발행일 2020년 5월
 등록번호 2289-0262
 발행인 김순석 이사장
 편집·진행 김명기 국장, 박소희 대리
 발행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02-752-2037)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1길 34, 5층
 디자인 (주)그리고나무(02-2268-2592)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3길 51
 인쇄 삼화인쇄(주)

〈로스쿨 창〉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홈페이지(info.leet.or.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로스쿨 창〉에서는 소중한 원고를 기다립니다.
 showe@leet.or.kr

1

변호사시험의 완전 자격시험화 방안 심포지엄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2주가량 앞둔 지난 4월 9일(목) 코리아나호텔 다이아몬드홀에서 <변호사시험의 완전 자격시험화 방안>을 주제로 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법전원협의회는 지난해부터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 방안에 관한 연구를 추진한 바 있으며, 이번 심포지엄의 주제발표는 해당 연구진의 연구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심포지엄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인사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김순석 이사장

“로스쿨 학생들이 시험 부담을 덜고, 본래 로스쿨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 및 단체 등이 다함께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법전원협의회도 오늘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문제점을 개선하고 '변호사시험의 완전한 자격시험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발제 1 로스쿨의 현실과 목표의 괴리

이승준 교수(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로스쿨 제도의 도입은 법학교육은 물론 법조인 양성체계, 법률서비스, 사법 제도 등 법조 전반 나아가 우리 사회의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는 의도 하에 원대한 목표와 중대한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이루어졌다. 그러나 로스쿨 도입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되돌아보면 로스쿨을 둘러싼 현실은 변호사시험의 변질로 인해 당초 목표와는 엄청난 괴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로스쿨의 도입을 통해 '시험을 통한 법조인의 선발시스템'을 버리고 '교육을 통한 법조인의 양성시스템'으로 전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시험은 여전히 '선발시험'으로 운용되고 있다. 그 결과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은 매년 감소하여 제8회 변호사시험에 이르러서는 50%에 불과한 실정이다. 응시자 2명 중 1명은 떨어지는 시험이 되었다.

발제 2 변호사의 양적 공급 규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두얼 교수(명지대학교 경제학과)



- 정부는 국민들이 법률 관련 서비스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법조전문인력의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을 추진했어야 한다. 하지만 정부 정책은 자격시험에 합격자 수 제한을 두는 방식으로 공급을 억제하는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오히려 국민들의 후생을 저해해 왔다.
- 변호사 시장이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변호사 공급을 현재 수준에서 동결하거나 오히려 줄여야 한다는 주장은 많은 문제가 있다. 첫째로 “포화 상태”라고 하는 개념은 지금보다 변호사 공급이 늘어날 경우 그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하지만 공급이 늘어날 경우에는 변호사의 수입이나 임금이 하락하게 되고, 이것은 새로운 수요를 만들게 되어 일자리를 얻게 된다. 결국 변호사 시장이 “포화 상태”라는 주장은 변호사의 소득 수준은 현재 상태를 유지한다는 전제를 다르게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발제 3 자격시험화 로드맵

오수근 교수(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변호사시험이 자격시험이므로 자격시험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것은 자명하다. 현재와 같이 합격자 수를 먼저 생각하는 것은 자격시험에 맞지 않는 사고이고 잘못된 집행이다. 변호사시험은 변호사 자격부여에 필요한 역량을 평가하는 절차로 시행되어야 한다.
- 법전협은 응시자 대비 단기 60%, 장기 75% 합격을 건의한 바 있다. 설문조사에서는 적절한 합격률을 응시자 대비 70~80%라고 본 응답이 제일 많았는데, 완전 자격시험을 선택한 견해를 고려하면 80% 이상이 다수의 견해로 보인다. 이러한 여러 관점과 의견을 고려할 때 응시자 대비 80% 합격이 적절한 수준이라고 본다.

토론 1 권재열 원장(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교육과정이 변호사시험에만 따라가는 획일적이고 단순한 수험법학으로의 변질을 막기 위해서는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가 반드시 요구된다. 특히 지금 특성화 교육이 사실상 고사(枯死)의 기로에 서있다는 점을 직시한다면 변호사시험이 변호사시험법 제2조의 취지에 맞게 시행될 필요가 있다.
-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을 지금과 같이 현저히 낮게 유지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의 인가제도를 비롯하여 총 입학정원제도와 모순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 변호사시험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의무를 방기(放棄)하는 것이라는 비난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토론 2 송양호 원장(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다양화·전문화를 추구하는 로스쿨을 만들고 법전원의 법학교육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대안은 원래 로스쿨을 도입하면서 천명했던 변호사시험을 선발시험이 아닌 자격시험화하는 것 뿐이다.
- 자격시험화 한다면 발표자들에게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에 부합되게 입학 정원의 85%(1,700명) 또는 응시자 대비 단기 60%(1,800명), 장기 80%가 맞다고 보고 다만, 단계별로 접근하는 것에 찬성한다.
- 다만, 법전원에서 엄격한 학사과정 운영을 통하여 재학생의 10% 정도는 반드시 선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유급제도를 활용해야 한다. 또한 완전 자격시험화를 요구하면서 동시에 변호사시험의 응시 횟수(예를 들어서 졸업 후 3회)를 제한하여 변시 낭인을 막을 수 있는 방법도 같이 강구하여야 한다.



토론 3 장용범 교수(사법연수원)

- 변호사시험의 완전 자격시험화를 위해서는 각 법학전문대학원이 위와 같은 취지와 목표에 부합하게 학생을 선발하고 교육하고 있는지, 변호사시험이 위와 같은 변호사 자격을 적절하게 평가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문제점이 있다면 그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개선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응시자 대비 80% 합격이 적절한 수준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현재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교육을 받은 대부분의 학생이 변호사에게 필요한 직업윤리와 법률지식 등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위와 같은 전제가 가능한지 의문이다. 또한 변호사시험의 완전 자격시험화가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응시자 대비 합격률과 연동시키는 것은 서로 모순되는 주장이 아닌지 생각된다.



토론 4 남기욱 변호사(법무법인 올원)

- 변호사시험을 완전 자격시험화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주장은 아무런 사전 준비 및 필수적인 제도 마련도 없이 단지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늘리기 위한 방편으로 제기된 것에 불과하고, 우리나라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당시 이루어진 사회적 합의에 반하며,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추구하고 있는 주된 목적인 양질의 법조인 양성이라는 측면에서 선뜻 찬성하기 어렵다.
- 현재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50% 전후이지만 초시 합격률 기준으로는 70%에 육박하고 상당수 대학들의 누적 합격률 기준이 80%를 상회한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현재의 합격률은 '양질의 법조인'을 담보하기 위해 불가피하다.



토론 5 임장혁 차장, 변호사(중앙일보)

- 완전 자격시험화 주장은 자칫 잘못하면 어느새 '기득권'으로 분류되고 있는 로스쿨 관계자들이나 발등에 불이 떨어진 재학생들의 이기심의 발로로 비춰질 여지가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 변시의 응시자 대비 합격률이 저하되면서 로스쿨 간에는 변시 합격률을 끌어올리기 경쟁이 벌어지고 있고, 일부 로스쿨에선 합격률 통제를 위해 졸업 시험 강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응시 기회를 제한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로스쿨 관계자들은 학교별 변시 합격률이 또 다른 서열화의 잣대가 될 수 있음을 우려하지만 아무런 기준도 근거도 없이 학부 네임밸류에 따라 인식된 서열이 고착화되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다.
- 형식적인 로스쿨 평가 외에도 요식적인 법조 윤리 교육, 유명무실한 진로 지도, 교육방법론 및 교재 개발의 정체, 입학사정의 불투명, 입학자원의 다원성 감소 등 많은 문제들이 제기돼 왔지만 어떤 로스쿨이 이런 문제를 속 시원하게 풀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1부 주제발표의 좌장을 맡은 고려대학교 법전원 안효질 원장 2부 토론의 좌장을 맡은 이화여자대학교 법전원 오종근 원장 <변호사시험의 완전 자격시험화 방안> 심포지엄 현장 토론 종료 후 청중의 질의를 받는 토론자들의 모습

※ 위 내용은 심포지엄 자료집에서 발췌하였습니다.

2

“법학전문대학원 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변호사시험의 적정 합격률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변호사시험 합격에 관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회의 건의서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둔 지난 3월 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이 응시자 대비 60% 이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법무부와 교육부 등 유관기관에 제출하였다.

- (변호사시험 합격 결정) 변호사시험법 제10조(시험의 합격 결정)에 의거, 법전원 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하도록 규정
 - ※ 1) (제1회 변시합격자 발표(12.03.23)) 법전원 도입취지 및 자격시험 성격 고려하기로 함
 - 2) (대법원 사법개혁위원회) 기존 사법시험을 자격시험인 변호사시험으로 전환하여 변호사 수 확대, 법전원 교육을 충실하게 이수할 경우 합격할 수 있는 시험 시행
- (법무부 법조인 배출 통제) 법전원을 통한 법조인 양성제도 퇴색
 - (법조인 양성기관 안착) 교육부 엄격한 설치인가 이행점검 실시, 대한변협 엄정한 평가인증 실시, 전국 25개 법전원 우수한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법조인 양성
 - (교육부 이행점검과 대한변협 평가 인증 유명무실) 법무부가 법조인 배출 통제를 위한 선발시험으로 계속 시행시 법전원법에 의거, 법학교육위원회와 평가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되며, 개별 법전원에 매년 재정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 초래

설치 입학 교육 ↓	교육부 법학교육 위원회	<엄격한 설치인가, 매년 이행점검 실시, 선발 확대> • 이행점검: 5개 영역, 13개 항목(법정 9개, 정책 4개) • 장학금 30%이상 지급, 등록금 의존율 55% 미만 • 특별전형 5% ⇒ 7% 확대, 지역균형인재 10%, 20%이상 선발
인증 평가 ↓	대한변협 법전원 평가위원회	<25개 법전원 평가인증, 법조인 양성 성공적 안착 총평> • 학생, 교원, 교육과정, 교육환경, 교육성과 5개 영역, 18개 항목, 159개 요소 엄정 평가 • 법전원법 의거 자체평가 및 본평가 실시

법조인 배출 X	법무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변시 선발시험 운영, 통제 / 변시낭인 양산> • 합격률 제1회 87.15%⇒제8회 50.78% 급락 (입학대비 특별전형 33.6%, 지역인재 35.9% 불과) • 법전원 정부정책 분열, 양성제도 퇴색	'오탈자' 총678명 (1~47)
----------------	-----------------------	--	--------------------------

- (정부의 정책적 목표달성 한계) 문제인 정부는 정책목표로써 입학기회 확대(특별전형 선발 5%⇒7% 확대), 지역균형인재 선발(10~20%)을 의무화하도록 강제하고 있음.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입학기회만 줄 뿐 실질적으로는 합격률을 통제하고 있어, 정부의 당초 취지가 퇴색되고 있음.
- (변호사시험 합격률 급락) 교육의 황폐화 가속,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 도입취지 몰각, 법전원 교육 파행 야기, “제1회 합격률 87.15% ⇒ 제8회 50.78%로 급락”

교육이 아닌 시험에 의한 선발제도로 전략	• 법전원 교육, 변호사시험, 실무연수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도입취지 붕괴
로스쿨의 변호사시험 학원화 경향	• 변호사시험 과목만 수강, 특성화과목과 전문선택과목의 폐강 속출, 법전원 교육의 부실화 가속 → 수험법학 위주의 변호사시험에 매몰
국제경쟁력 및 직업윤리 갖춘 법조인 양성 목적 퇴색	• 다양한 직역과 법률시장 개방에 맞춰 국제 무대에서 활동할 법률전문가 양성이 어려움 • 법전원은 창의적·전문적인 리걸마인드의 함양보다는 수험 적합적 교육에 치중

[참고1] 합격률 통계 분석

- (응시자 대비 합격률) 1회: 87.15% / 7회: 49.35% / 8회: 50.78% (1회 대비 36.37% 하락)
- (초시 응시 합격률) 1회: 87.15% / 7회: 69.80% / 8회: 69.63% (1회 대비 17.52% 하락)

[참고2] 언론사 기사자료

- 로스쿨 재학생 5번째 자살, 무엇이 이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나('19.11.07, 법률신문)
(매년 낮아지는 '변호사시험 합격률', 거기 따른 과잉 경쟁이 이유)
- [로스쿨 10년] 변시낭인 속출, 왜? ('19.03.22, MBC뉴스)
(5년 5회 응시제한, 로스쿨 변호사시험 합격에만 매달리는 '고시학원'으로 변질)
※ (오탈자) 1기 156명, 2기 208명, 3기 179명, 4기 135명, 총 678명

[참고3] 엄정학 학사관리 (자퇴, 제적 등)

- (2017학년도) 의과대학 0.31% VS 로스쿨 2.05%, 1.74% 높은 엄정 관리
- (2018학년도) 의과대학 0.28% VS 로스쿨 3.06%, 2.78% 높은 엄정 관리

※ 출처: 대학알리미

SPECIAL REPORT

■ 변호사시험 적정 합격률 보장, 법조인력 증원의 필요성

○ 대국민 법률서비스 질적 향상과 양적 확대로 사법개혁 추진 목적 달성

- 법률자문 및 비소송 분야가 법률시장 성장 주도(매출규모 매년 5~7% 성장)
- (인구 1만명당 변호사수) 미국 40.85명, 영국 31.20명, 독일 19.95명, 한국 6.20명에 불과

○ 법률시장 개방에 대처하며 세계적인 경쟁력과 다양성을 갖춘 법조인 양성

- '18년 법률서비스 5억8530만 달러 적자, '19년 한국 M&A시장 상위 20개 로펌 중 외국계 11개
- 법전원 교육 정상화, 특성화 분야 강화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법조인 양성 필요

○ 법전원생 변호사시험 합격에 대한 예측가능성 제고, 창의적이고 우수한 법조인력 양성을 위한 기반조성 가능

- 법전원생 변시과목 외 전문분야, 새로운 업종진출 모색 가능, 교육 정상화 실현
송무 변호사 물림 현상 완화, 다양한 직역 진출 가능
- (법전원 졸업생 취업현황) 2017년 90.0%, 2018년 94.1%, 2019년 94.6%

“법전원 설립 취지, 법조인력 수급상황을 고려할 때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응시자 대비 60% 이상(붙임①참조) 보장되어야 합니다.”

[붙임 ①]

변호사시험 응시자 대비 60~80% 합격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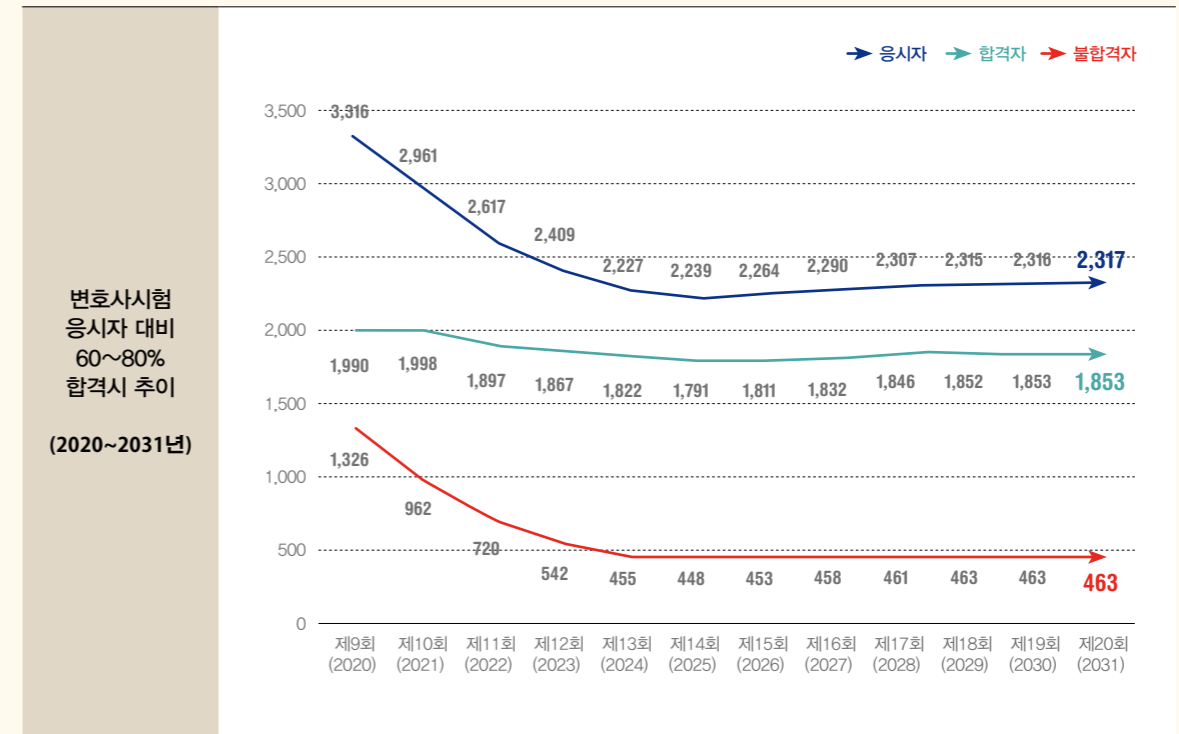
■ 변호사시험 응시자 대비 합격률 60~80% 합격시 추이

2030년(19회)부터 응시자 2,316명, 합격자 1,853명, 합격률 80% 동일 유지

(단위:명, %)

구분	2019 (8회)	2020 (9회)	2021 (10회)	2022 (11회)	2023 (12회)	2024 (13회)	2025 (14회)	2026 (15회)	2027 (16회)	2028 (17회)	2029 (18회)	2030 (19회)	2031 (20회)
응시자	3,330	3,316	2,961	2,617	2,409	2,277	2,239	2,264	2,290	2,307	2,315	2,316	2,316
합격자	1,691	1,990	1,998	1,897	1,867	1,822	1,791	1,811	1,832	1,846	1,852	1,853	1,853
불합격자	1,639	1,326	962	720	542	455	448	453	458	461	463	463	463
합격률	50.78	60.00	67.50	72.50	77.50	80.00	80.00	80.00	80.00	80.00	80.00	80.00	80.00

※ (합격률) '20년 60.0%, '21년 67.5%, '22년 72.5%, '23년 77.5%, '24년부터 80%



[참고] 기준값(추정)

① 합격률

구분	2020년(제9회)	2021년(제10회)	2022년(제11회)	2023년(제12회)	2024년(제13회)
합격률	60.0%	67.5%	72.5%	77.5%	80.0%

② 졸업생수 : 1,873명 (8년 석사학위 취득자 누적 14,985명 기준, 평균 1,873명)

③ 응시제한 대상자(오탈자) : 평균 합격률 1% 증가시 오탈자 전년대비 8.23명 감소

연도	기준값		추정									
	2016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평균합격률 (5개년, %)	69.25	53.58	53.56	55.82	60.03	65.66	71.50	75.50	78.00	79.50	80.00	80.00
오탈자(명)	108	237	239	219	184	138	90	57	36	24	20	20

※ 1) 연도별 합격률 적용

④ 응시자수 : (졸업생 수) + (전년도 불합격자 수) - (전년도 응시제한 대상자)

[붙임 2]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관련 고려사항

1 법조인 배출 현황 (2009~2019)

■ 법조인 배출 현황 (2009~2019년) “목표 미달”

- 2009년 법전원 도입 당시 법조인력 수급전망 2009~2019년 총 22,696명 배출 전망.
동일기간 現 동기간 법조인력 19,532명 배출 (※3,164명(13.9%) 부족)

(단위: 명)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
사법연수원	980 (100%)	978 (100%)	970 (100%)	1,030 (41.5%)	826 (34.9%)	786 (33.6%)	509 (24.5%)	356 (18.4%)	234 (12.8%)	171 (9.7%)	117 (6.5%)	6,957 (35.6%)
변호사시험	0	0	0	1,451 (58.5%)	1,538 (65.1%)	1,550 (66.4%)	1,565 (75.5%)	1,581 (81.6%)	1,600 (87.2%)	1,599 (90.3%)	1,691 (93.5%)	12,575 (64.4%)
합계	980	978	970	2,481	2,364	2,336	2,074	1,937	1,834	1,770	1,808	19,5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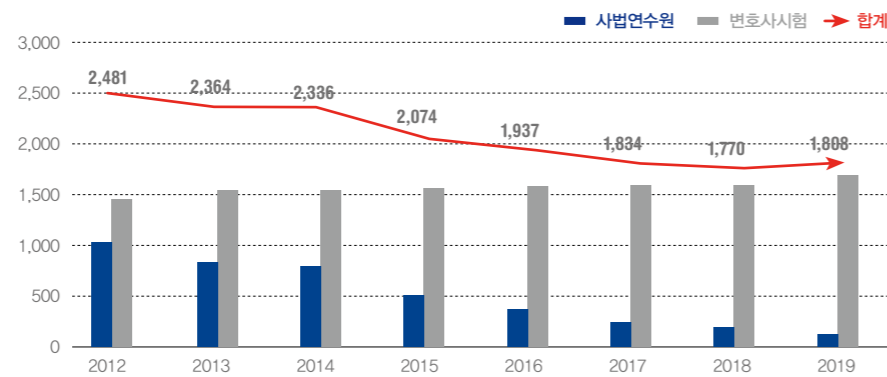
- ※ 1) (2012년) 2,481명 배출 대비 (2019년) 1,808명 배출(673명(27.1%) 감소)
- 2) 2020년도 사법연수원 수료생 68명(전년대비 49명 감소)

[참고] 2012~2019년 법조인 배출현황 (제1~8회 변호사시험)

(단위: 명)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
사법연수원	1,030 (41.5%)	826 (34.9%)	786 (33.6%)	509 (24.5%)	356 (18.4%)	234 (12.8%)	171 (9.7%)	117 (6.5%)	4,029 (24.3%)
변호사시험	1,451 (58.5%)	1,538 (65.1%)	1,550 (66.4%)	1,565 (75.5%)	1,581 (81.6%)	1,600 (87.2%)	1,599 (90.3%)	1,691 (93.5%)	12,575 (75.7%)
합계	2,481	2,364	2,336	2,074	1,937	1,834	1,770	1,808	16,604
전년대비증감	-	-117	-28	-262	-137	-103	-64	38	-673

2012~2019
※제1~8회
변호사시험



2 변호사시험 현황 (응시자, 합격자, 합격률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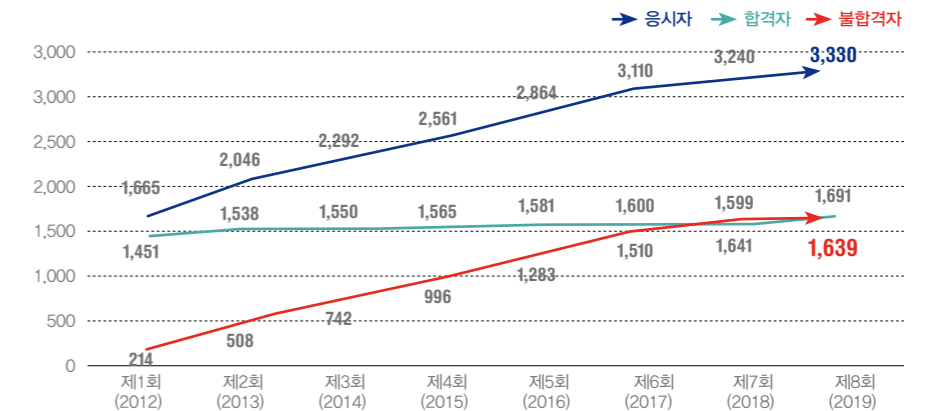
- 1회~3회까지는 교육정상화 취지에 부합하였으나, 4회부터는 비정상적으로 운영됨.
- 불합격자 대폭 증가: 제1회 214명 ⇨ 제8회 1,639명 / 1,425명(7.7배) 증가
- 합격기준 점수 대폭 상승: 제1회 720.46점 ⇨ 제8회 905.55점 / 185.09점 상승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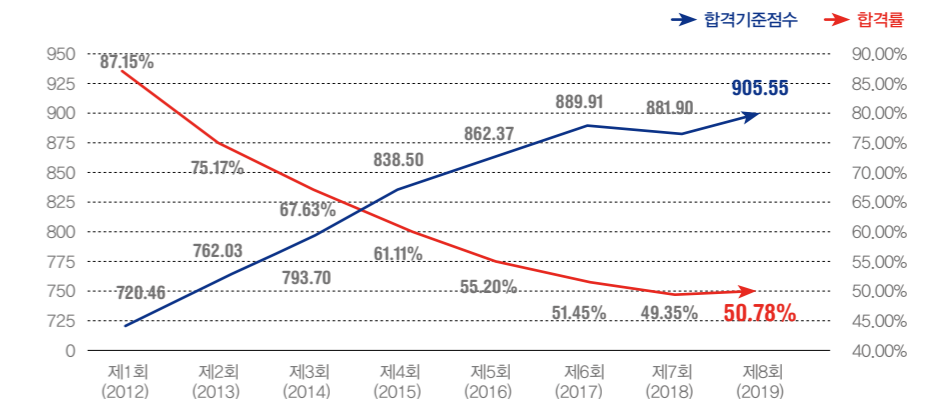
구분	제1회 (2012)	제2회 (2013)	제3회 (2014)	제4회 (2015)	제5회 (2016)	제6회 (2017)	제7회 (2018)	제8회 (2019)
응시자	1,665	2,046	2,292	2,561	2,864	3,110	3,240	3,330
합격자 (합격률)	1,451 (87.15%)	1,538 (75.17%)	1,550 (67.63%)	1,565 (61.11%)	1,581 (55.20%)	1,600 (51.45%)	1,599 (49.35%)	1,691 (50.78%)
불합격자	214	508	742	996	1,283	1,510	1,641	1,639
합격기준점수	720.46	762.03	793.70	838.50	862.37	889.91	881.90	905.55

※ 제5회(2016년) 변시 응시자대비 합격률이 60% 아래로 떨어지면서 로스쿨의 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됨

변호사시험
• 응시자
• 합격자
• 불합격자



변호사시험
• 합격기준점수
• 합격률



3 법전원 석사학위 취득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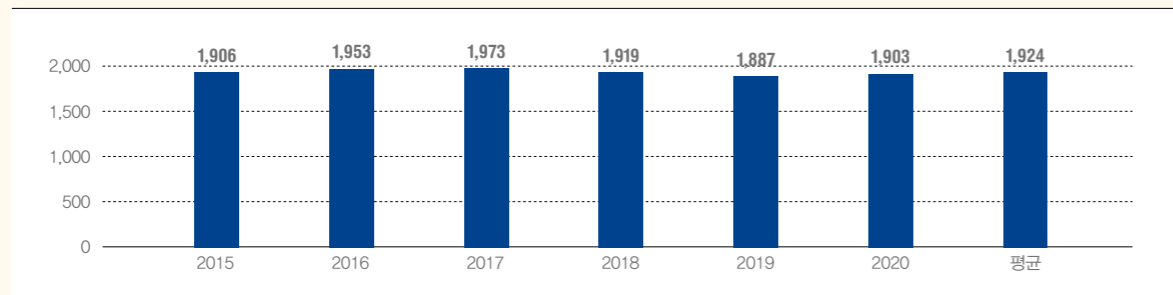
■ 법전원 1~5기 석사학위 취득자 현황 (법무부 석사학위취득자(누적) 발표자료)

(단위: 명, %)

입학기수		1기	2기	3기	4기	5기	평균
실제 입학인원		2,000	2,104	2,092	2,092	2,099	2,077
석사학위 취득자	인원	1,835	1,961	1,954	1,947	1,977	1,935
	비율	91.75%	93.20%	93.40%	93.07%	94.19%	93.14%
석사학위 미취득자	인원	165	143	138	145	122	143
	비율	8.25%	6.80%	6.60%	6.93%	5.81%	6.86%

※ (25개 법전원 당해년도 석사학위 취득자 현황)

(단위: 명)



■ 변호사시험 초시 응시자 합격 현황

① 학위취득 연도 기준, 당해년도 응시를 초시로 구분

- 초시 응시자의 합격자 2012년 1,451명 ⇨ 2014년 1,395명 / 56명 감소
- 합격률 2012년 87.15% ⇨ 2014년 76.82% / 10.33% 감소

(단위: 명, %)

구 분		2012년 (제1회)	2013년 (제2회)	2014년 (제3회)	평균 (2013~2014)	
실제 입학인원		2,000	2,104	2,092	2,098	
초시 응시자	총인원	1,665	1,829	1,816	1,823	
	합격자	인원	1,451	1,477	1,395	1,436
		비율	87.15%	80.75%	76.82%	78.79%
	불합격자	인원	214	352	421	387
비율		12.85%	19.25%	23.18%	21.21%	
실제 입학인원 대비 초시 응시자 비율		83.25%	86.93%	86.81%	86.87%	

② 입학 후 3년 만에 바로 응시한 경우를 초시로 구분

- 초시 응시자의 합격자 2015년 1,222명 ⇨ 2019년 1,112명 / 110명 감소
- 합격률 2015년 74.74% ⇨ 2019년 69.63% / 5.11% 감소

(단위: 명, %)

구 분		2015년 (제4회)	2016년 (제5회)	2017년 (제6회)	2018년 (제7회)	2019년 (제8회)	
실제 입학인원		2,092	2,099	2,072	2,084	2,117	
초시 응시자	총인원	1,635	1,666	1,632	1,616	1,597	
	합격자	인원	1,222	1,212	1,186	1,128	1,112
		비율	74.74%	72.75%	72.67%	69.80%	69.63%
	불합격자	인원	413	454	446	488	485
비율		25.26%	27.25%	27.33%	30.20%	30.37%	
실제 입학인원 대비 초시 응시자 비율		78.15%	79.37%	78.76%	77.54%	75.44%	

4 법전원 특별전형 및 지역균형인재 변시 합격률 현황

■ 특별전형 입학생 변시 합격률

- (전체) 8기 특별전형 입학인원 대비 합격률 33.6%에 불과
- (수도권vs지방권) 수도권 46.6% vs 지방권 18.8%, 합격률 27.8% 차이

(단위: 명, %)

구분	수도권		지방권		전체	
	7기	8기	7기	8기	7기	8기
입학인원	67	73	66	64	133	137
합격자	39	34	19	12	58	46
합격률	58.2%	46.6%	28.8%	18.8%	43.6%	33.6%

※ 특별전형 5% ⇨ 7% 확대 선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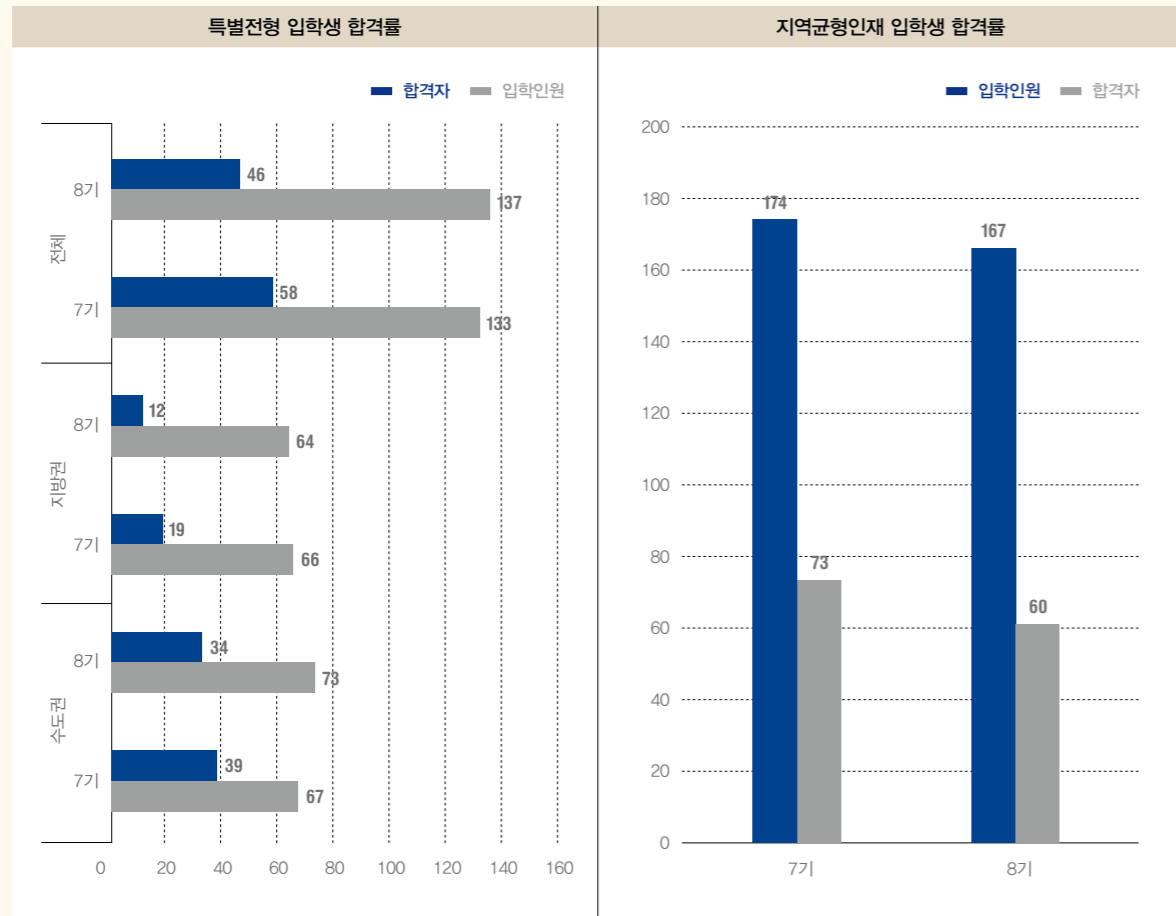
■ 지역균형인재 입학생 변시 합격률

- (합격률) 8기 지역균형인재 입학인원 대비 합격률 35.9% 불과

(단위: 명, %)

7기			8기		
입학인원	합격자	합격률	입학인원	합격자	합격률
174	73	42.0%	167	60	35.9%

※ 지역균형인재 입학정원의 10%, 20% 이상 선발



5 법원원 졸업생 취업현황 (2017~2019)

- 법원원 졸업생의 취업률 평균 “92% 이상 취업”
- 변호사시험 합격자, 취업에 문제 없으며 다양한 직역에서 활동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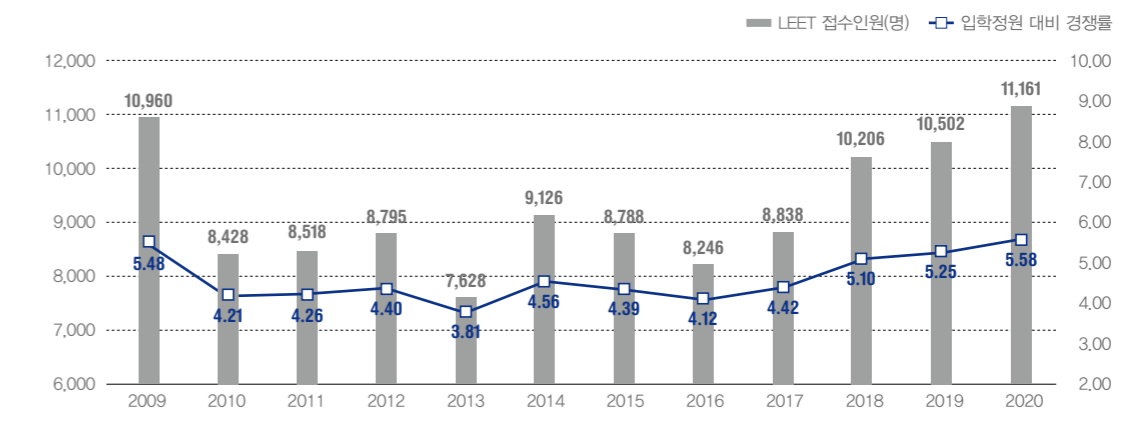
구분	2017년(6기)	2018년(7기)	2019년(8기)	평균
취업대상자	1,396	1,360	1,428	1,395
취업자	1,256	1,280	1,351	1,296
취업률	90.0%	94.1%	94.6%	92.9%

※ 25개교 법원원 인가조건: 법과대학 폐지(4,423명 공금 감소)
과거 법과대학 졸업생들이 진출한 대부분의 법조직역에 법원원 출신 변호사들이 진출(취업 용이)

6 법원원의 단계별 법조인 양성

- 많은 법조인 희망자 가운데 우수한 학생만 선발
- 치열한 경쟁과 다단계의 검증을 통해 법조역량을 갖춘 자만 변호사시험에 응시
- 높은 취업률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이유없이 변시 선발시험 운영, 법조인 배출 통제

〈법학적성시험 접수인원 및 입학정원 대비 경쟁률 추이〉



법학적성시험

- 2020학년도 접수인원 : 11,161명
- 2016학년도 대비 35.35%, 전년대비 6.27% 증가

공명한 입학전형

- 2020학년도 2,130명 최종 합격
- LEET 접수인원 대비 법원원 합격비율 19.08%

엄정한 학사관리

- 연평균 학사경고 390명, 유급 88명 발생
- 작년 제적, 자퇴 등 학업중단 인원 : 161명

법조윤리시험

- 제8회 : 59.39%, 제6, 7, 9, 10회 : 95% 상회
- 합격가능성 예측 불가, 연평균 278명 불합격

엄격한 졸업사정

-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연 3회 및 자체 졸업시험 실시
- 작년 졸업유예 인원 : 124명(6.2%)

변호사시험

- 제8회 시험 3,330명 응시, 1,691명 합격(50.78%)
- 최근 3년간 평균 50.53% 합격

다양한 직역진출

- 작년 8기 취업대상자 1,428명 중 94.61% 취업
- 대국민 법률서비스 향상에 기여

issue 01

변호사시험, 공정에 수험생 인권·편의까지 더한다

법무부는 2021년에 시행되는 제10회 변호사시험 응시자에게 시험용 법전을 한글 법전으로 제공하기로 하였으며, 시험 시간 중 화장실 사용을 확대 허용할 방침임을 밝혔다. 지금까지 시험장에서 응시자에게 제공해 온 시험용 법전에는 관보에 공고된 원문대로 법령이 수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부 법령의 한자 법령문은 응시자에게 불편의 대상이었다. 이러한 수험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법무부는 법제처가 제공하는 온라인 한글 법령 서비스와 현행 시각장애 응시자용 한글 법전 등을 바탕으로 시험장에서 활용하기 편한 한글 법전을 제작해 응시자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민사법 사례형 및 기록형 시험 등 2시간을 초과하는 일부 과목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시험 시간 중 응시자의 화장실 사용을 허용하고 있었으나, 제10회 변호사시험부터는 모든 과목에서 시험 시간 중 응시자의 화장실 사용을 확대 허용할 방침이다.

※ 시험시작 후 응시자 본인확인 절차에 소요되는 최소시간과 종료 후 답안지 회수 준비 등 절차를 감안하여 시험시작 30분 경과 후부터 시험종료 20분 전까지 화장실 사용을 허용하는 방식 적용



동아대 로스쿨, 동문·교수 기부로 학생열람실 등 조성

동아대 로스쿨이 동문과 교수의 기부로 학생열람실과 교강사휴게실을 조성했다. 이번에 조성된 동아대 로스쿨 학생열람실은 '항심실(恒心室)'로, 교강사휴게실은 '근인호학지실(近仁好學之室)'로 이름 붙여졌다. '항심실'은 초심을 지켜 학문에 매진하자는 뜻이며, '근인호학지실'은 인을 가까이 하고 학문을 논하는 장소라는 뜻이 담겨 있다. 항심실은 동아대 법학부 03학번 박주영 변호사가 1,000만 원 상당의 책상·의자를, 정해영 겸임교수가 100만 원 상당의 LED스탠드 등을 기부해, 노트북 사용이 가능한 개방형 열람실로 꾸며졌다. 또 근인호학지실은 교·강사들을 위한 공간으로 최우용 원장과 동문 심민영 작가가 미술 작품을, 하태영 교수가 전자제품을, 동문 김창오·류영필 변호사가 각종 식물 및 화분 등 비품을 기부해 따뜻하고 아늑한 공간이 만들어졌다. 기사출처 : 고시위크

issue 03

변호사시험 합격률 정상화 촉구 집회 열려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둔 지난 4월 21일(화) 법조문턱낮추기 실천연대와 법학전문대학원 원우협의회, 법조인 배출 정상화연대의 공동주관으로 법무부 과천 청사 앞에서 '신규 변호사 배출 통제 규탄대회'가 열렸다. 60여 명의 참가자들은 "기성 법조인들은 어떤 잘못을 해도 자격이 박탈되지 않으면서, 새롭게 진출하려는 로스쿨 후배들의 길을 막고 있다."고 주장하며, 변호사시험 합격률의 정상화를 촉구했다.



issue 04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1,768명 합격

법무부는 지난 4월 24일(금)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구 및 경제규모 변화, 해외 주요국의 법조인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년도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총점 900.29점 이상인 자 1,768명(전년 대비 77명 증가)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53.32%로 제8회 변호사시험 50.78%에 비해 소폭 상승하는데 그쳤다.



합격인원(합격률)	성별	전공별
합격 1,768명(53.32%)	남성 972명(54.98%)	법학 전공 637명(36.03%)
불합격 1,548명(46.68%)	여성 796명(45.02%)	법학 비전공 1,131명(63.97%)

2021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원서접수 안내

법학적성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을 이수하는데 필요한 수학적능력과 법조인으로서 지녀야 할 자질과 적성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으로, 법학적성시험의 성적은 당해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의 필수요소 중 하나로 활용된다. 원서접수는 5월 26일(화)부터 6월 4일(목)까지이므로, 접수 기한을 놓치지 않게 유의하자.

주요내용	일자	비고
원서접수	2020.05.26(화) ~ 06.04(목) 18:00	http://www.leet.or.kr
수험표 교부	2020.07.06(월) ~ 07.19(일)	
2021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시행	2020.07.19(일)	
성적 발표	2020.08.18(화)	http://www.leet.or.kr
공동입학설명회	8월 말 예정	한양대학교 체육관

※ 자세한 사항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홈페이지 및 61페이지 참고
 ※ 매년 4~5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주관하는 '법학적성시험 전국순회설명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강연'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전국순회설명회 동영상과 자료집(로스쿨창 3~4월호)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홈페이지(info.leet.or.kr)에서 확인 및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지난 3월 해킹 사고에 관한 역대 판결을 망라한 책이 출간됐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법원의 판결까지 담겨있어 출간 초부터 큰 화제가 되었는데, 무엇보다 '해커출신 변호사'의 저서라는 타이틀이 독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카이스트 출신 엔지니어에서 현재는 변호사로 활약하고 있는 전승재 변호사의 이야기이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와 법률가 사이의 통역관을 찾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변호사로 기억되고 싶어”

법무법인(유한) 바른
전승재 변호사

은 일상 탈출을 꿈꾸는데, 본인도 예외는 아니었다. 당시 회사 동료들은 로스쿨 합격보다 회사에서 도망갈 수 있다는 것을 더 부러워했다(웃음).

‘법학’이라는 학문에 쉽게 적응한 편이었나? 오랜 시간을 ‘이과생’으로 살아온 탓에 적응이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다.

이공계와 문과의 질서가 많이 달라서, 로스쿨 시절은 물론 변호사가 된 후에도 고생을 하고 있다. 시행착오는 지금도 진행 중이다. 공부의 내용보다도 문화의 차이가 더 극복하기 어렵다.

체감하는 문화적 차이에는 어떤 것이 있나?

법조계는 ‘권위’와 ‘신뢰’가 지배하는 정도가 이공계보다 훨씬 크다. 물론 이공계에도 존경받는 거장들이 있지만, 거장이 아닌 평범한 엔지니어라 할지라도 도전의 기회가 어느 정도 주어지는 편이다. 엔지니어가 만든 수식이나 프로그램 등은 정형화된 방법으로(컴퓨터에 넣고 돌려본다든가) ‘검증’이 가능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그 검증을 통과하면 누가 만든 작품이라도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을 수 있

다. 한편, 법조인의 작품은 ‘글’ 또는 ‘말’인데, 이것은 누구의 입에서 나오느냐에 따라 설득력의 정도 및 파급효과가 현저하게 다르다. 글/말의 내용이 맞는지/적절한지 즉시 알기 어렵고 사람들 사이에서 평판이 형성되는 과정을 통해 비교적 천천히 검증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권위와 신뢰를 쌓아 온 사람의 이른바 ‘글발’ 또는 ‘말발’이 더 잘 먹히는 경향이 이공계보다 더 강하다. 판검사 전관 출신 변호사의 승소율이 높다면 이것이 주된 요인일 것이다. 초심자로서 사회적 검증을 통과하는데 힘이 더 많이 들 수밖에 없는 구조다.

로스쿨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영똥한 이야기지만, 로스쿨에서 다이어트에 성공했다. 어린 시절부터 비만이었고 입학 당시 체중은 약 80kg이었는데 3년 후 67kg으로 졸업했다. 중간고사 또는 기말고사 시즌이 지날 때마다 거의 1kg씩 살이 빠졌다. 의도적으로 다이어트를 하지는 않았는데, 나쁜 성적으로 졸업하면 자칫 엔지니어 시절보다 연봉이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던 듯하다. 한편, 그 덕분에 좋은 일도 있었다. 전에는 꿈도 못 꿰던 슬림핏 셔츠와 허리 라인이 쏙 들어간 자켓을 인생에서 처음 입어볼 수 있었다(웃음). 참고로 결혼하고 두 아이의 아빠가 된 지금은 로스쿨 입학 전 체중을 서서히 회복하고 있다. 총각 때 산 예쁜 옷들이 다시 작아져서 못 입고 있어 슬프다.

현재 법무법인(유한) 바른에서 근무 중이다. 주로 어떤 사건을 진행하고 있나?

주 업무는 공정거래다. 기업의 독점, 담합 또는 불공정 거래로 인해 실제로 가격이 올랐는지를 봐야 하는데, 기업의 장부에는 수십, 수백만 건의 거래내역이 기록되어 있으니 도저히 사람 눈으로 볼 수 없다. 그런 빅데이터를 가공하고 통계를 내기 위해, 전산학도 시절부터 썼던 리눅스용 텍스트 에디터 ‘vim’, 모든 직장인의 친구 ‘엑셀’ 등을 활용한다. 거의 20년간 본인 손에 익은 도구이고, 사실 단순한 스킬이지만 기성 법조인들은 이런 자동화 작업을 익숙하지 않아 하더라. 그런 통계작업이 필요한 공정거래 사건이 본인에게 자주 할당되는 편이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본래 전공

소프트웨어
전문가와 법률
전문가의 언어를
서로 통역해주는
것이 본인의
과업이라고
생각한다.



을 살려 정보보호 분야에서 활동을 시작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올해 주무부처(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자문변호사로 위촉되었다.

과학적 지식과 컴퓨터 공학적 스킬, 거기에 법률지식까지 활용하는 모습을 보니, 로스쿨 도입 취지와 가장 부합하는 인물이 아닐까 싶다. 비법학계열 학부를 졸업한 후배들에게 로스쿨 진학을 권하고 싶은가?

강력히 추천한다. 사회 전방위에서 일어나는 법률분쟁에 대응하려면 다양한 전공을 가진 인재들이 유입되어야 한다. 미국이 선진국인 비결 중 하나가 적극적 이민정책에 힘입은 다양성인 것과 마찬가지로, 법조시장이 어렵다고 하니까 자기 분야에서 자리를 잡은 사람들이 굳이 로스쿨에 오는 모험을 하지 않으려 한다. 하지만 어느 분야를 전공했던 법률분쟁을 다루는 능력을 더하면 본인의 역량이 한결 더 커진다는 사실은 틀림이 없다. 예컨대 기성 변호사들은 건설 소송을 맡을 때마다 무척 고생을 하는데, 토목과 출신 변호사가 와서 설계자료와 공사내역서를 척척 봐낸다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지난 3월 해킹사고에 관한 역대 판결을 소개하고 분석한 <해커 출신 변호사가 해부한 해킹판결>을 펴냈다. 어떻게 쓰게 된 책인가?

컴퓨터공학과 법률이 접목되는 영역을 찾던 중 정보보호 분야가 눈에 띄었다. 마침 대량의 고객정보가 유출된 해킹사고들에 관하여 판례가 본격적으로 쏟아지고 있었다. 지난 3년간 그 판례들을 가지고 case study를 하면서 논문을 쓰거나 유관기관 및 학회에서 발표해 왔는데, 이번 기회에 책으로 엮어 보았다.

해킹 사건이 터질 때마다 해킹을 당한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점차 커지고 있는 추세다.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공격집행의 영역이 강화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인가?

단기간 내 법집행 강도가 급격히 높아져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 과거에는 기업이 고객정보를 해킹 당해도 민사상 손해배상 리스크만 생겼는데 그조차도 디펜스하기가 너무 쉬워서 문제였다. 그런데 과거에는 범위만이 아니었던 작은 부주의가 전담 부처가 생긴 지금은 범위반으로 규율될 수 있다. 행정청의 전담 조직이 생기면 아무래도 실적을 내야 하니 법집행이 엄격해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터져도 민사소송에 참여하는 피해자의 수가 많지 않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반면 미국은 '집단소송'이 제도화되어 있어, 국민들의 보호받을 권리를 더 지켜주는 것으로 보인다.

입법례의 차이이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륙법계 국가들은 처벌은 국가가 하고 손해배상은 권리를 주장하는 자(원고목록에 이름을 올린 자)가 받는 각 체계가 확실히 구분되어 있다. 이에 반해 미국은 역사적으로 관치가 약하다 보니 민사상 손해배상이 처벌 기능까지 일부 겸하게 되었는데, 이리하여 나온 제도가 '원고 목록에 없는 소비자들에게도 배상케 하는' 집단소송과, '실손해 이상의 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이다. 두 입법례 모두 장단점이 있는데, 아무래도 정보보호처럼 유연한 법적 규율이 필요한 분야는 미국식 제도 특유의 효율성이 주목을 받는다.

최근 구글 크롬의 새 암호화 알고리즘이 해커들에 의해 4일 만에 뚫렸을 정도로 해커들의 수법이 지능적이고 다양해지고 있다. IT 분야의 경우 법이나 제도가 기술 발전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다면?

법제도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변화하므로 원래 현실에 후행하는데, IT 기술처럼 발전 속도가 빠른 분야에서는 그 갭(gap)이 한층 더 벌어진다. 정책을 운영하거나 법률분쟁을 규율할 때 기술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그 목소리를 많이 들어야 한다. 즉, 정부와 법원이 기술 전문가들의 자문을 더 쉽게 받을 수 있는 채널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어느덧 7년차 변호사인데,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다면?

특정 사건을 언급하는 것은 아무래도 조심스러워서, "이건 사건 기록은 캐비닛에 묻고, 진 사건 기록은 가슴에 묻는다"는 말로 대신하겠다. 사실 방금 지어낸 말이다(웃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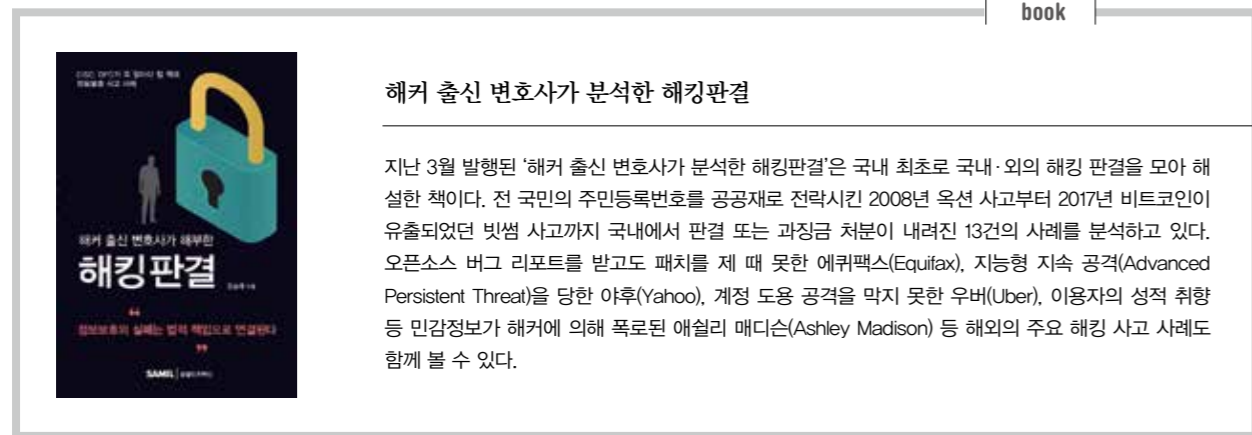
법조인으로서의 꿈은 무엇인가? 향후 행보에 대해서 알려 달라.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와 법률가 사이의 통역관을 찾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변호사로 기억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하나씩 할 것이다. 중국적으로 우리 아이들 세대에겐 지금보다 더 합리적인 제도를 물려주는 것이 목표다.

우리나라는 중앙집권식 왕정의 역사가 길어서 그런지 아직까지도 관치가 강하다. 경제활동에 정부의 규제가 많이 개입할수록 금지조항과 벌칙조항이 많아지면서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는 기본철학이 무너진다. 기업의 경제활동이 사회상규상 문제가 없더라도 어딘가 지엽적인 법률에 걸려 '불법'이 되어버릴 수 있다. 법을 다 지키고는 사업을 못하게 되는 셈인데, 이 경우 정부로서는 아무 기업이나 붙잡고 조사하면 처벌 근거를 찾을 수 있게 된다. 이처럼 '털어서 먼지 안 날 수 없는 제도' 하에서는 정부가 어디를 터느냐에 따라 기업이 천국과 지옥을 오가기 때문에 '논리' 보다는 '로비'가 지배하는 세상이 된다. 후진국의 독재정부일수록 이런 경향이 짙는데, 이 잣대에서 보면 우리나라도 아직 완전한 선진국이 아니다. 더 좋은 제도를 후세에 물려주려면 정부, 기업, 소비자, 그리고 전문가 집단이 끊임없이 토론해야 하며, 여기에 참여하는 소프트웨어 전문가와 법률 전문가의 언어를 서로 통역해주는 것이 본인의 과업이라고 생각한다.

전승재 변호사

대구과학고등학교 졸업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산학과 학사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산학과 석사
前 삼성전자 연구원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現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



해커 출신 변호사가 분석한 해킹판결

지난 3월 발행된 '해커 출신 변호사가 분석한 해킹판결'은 국내 최초로 국내·외의 해킹 판결을 모아 해설한 책이다. 전 국민의 주민등록번호를 공공재로 전락시킨 2008년 옥션 사고부터 2017년 비트코인이 유출되었던 빙썬 사고까지 국내에서 판결 또는 과징금 처분이 내려진 13건의 사례를 분석하고 있다. 오픈소스 버그 리포트를 받고도 패치를 제 때 못한 에퀴팩스(Equifax), 지능형 지속 공격(Advanced Persistent Threat)을 당한 야후(Yahoo), 계정 도용 공격을 막지 못한 우버(Uber), 이용자의 성적 취향 등 민감정보가 해커에 의해 폭로된 애슐리 매디슨(Ashley Madison) 등 해외의 주요 해킹 사고 사례도 함께 볼 수 있다.

당신은 어떤 변호사가 되고 싶습니까?



법률사무소 대건

최지호 변호사

어떤 주제로 기고문을 써볼까 고민하면서, 다른 변호사님들이 앞서 기고하신 원고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서초동 맛집 리스트’ 같은 가벼운 주제의 글도 괜찮다고 이야기 하던 담당 에디터의 말과 다르게, 다른 변호사님들이 기고하신 퀄리티 높은 원고들로 인한 충격과 공포 속에서, 지금이라도 주제를 바꿔야 하나 고민을 하였지만, 일단 제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일부러 맛집 탐방을 얼마나 다녔는데...)

강원도 속초가 고향인, 시골 아이였던 저의 어렸을 적 꿈은 과학자였습니다. 과학자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른 채 텔레비전 속 만화에서 로봇들을 만드는 그런 그냥 과학자였습니다. 하지만 중학교 3학년 시절 수포자의 대열에 들어서게 되어 자연스럽게 문과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고, 과학자의 꿈을 접게 되었습니다.

그 후 어떤 직업을 가져야 사회에 이바지하는 훌륭한 사람이 될지, 미래에 대한 고민으로 밤을 지새우며 고민하던 도중(일단 고민을 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역시나 텔레비전 속 드라마에 나온 멋진 검사를 보며 나도 저런 잘생긴 법조인이 되어야겠다는 꿈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 후 그 드라마의 배경이 되었던 대학교에 진학하였고, 꽤 오랜 시간 신림9동 고시촌의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후, 로스쿨에 진학하여 변호사가 되기까지, 20년 가까이 제 장래희망은

항상 법조인이었습니다.

로또 복권을 구입한 후 ‘로또가 당첨되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지’ 라며 당첨이 된 이후를 부질없이 꿈꾸듯, 저는 20년 동안 ‘법조인이 되면 이런 법조인이 되어야지’를 꿈꿔 왔습니다. 아주 오래전이었기에 당시 사법시험의 합격은 부와 명예의 확보 그 자체였습니다. 물론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발생하듯이 그에 따른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고,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정의를 지켜야 한다는 상당히 오글거리는 의무감 역시 차곡차곡 쌓아가던 시절이었습니다.

오랜 사법시험 준비 이후 로스쿨에 입학하게 되었고, 나이 10살 가까이 차이가 나는 동기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변호사로서의 사명감은 그간 많이 희석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법조인이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시작한 것이 아니라 법조인의 역할에 대한 고민은 해보지 않은 채 취업 준비를 하다 보니, 또는 동기들이 로스쿨을 지원한다고 하여 덩달아 지원한 경우들을 보며, 그들의 선택을 가버려 생각하였던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글을 쓰며 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나는 얼마나 사회 정의를 위하여 노력하고 헌신하였는가? 사회적 약자를 위하여 내가 한 일은 무엇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 저는 어떠한 대답도 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고, 동기들과 대화 당시의 제 오만함과 편견에 얼굴을 붉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고 세대가 변하듯 변호사라는 직업도 과거만큼 화려한 지위를 보장해주는 것이 아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많은 직업 중 하나라는 사실을 새삼 느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변호사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소송을 담당하는 송무 변호사와 (공)기업에 고용되어 기업 내부의 법률 자문 업무를 맡는 사내변호사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송무 변호사는 법정에 실제 출석하여 소송의 대리를 수행하는 변호사를 지칭하고, 사내 변호사는 각 (공)기업이나 단체 등에 소속되어 해당 단체의 특성에 맞는 일 및 그 단체의 모든 업무에 관여하게 된다고 보면 될 듯합니다.(물론 사내변호사도 업무상 송무를 담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송무 변호사의 경우 법인이거나 법률사무소에 소속되어 배당되는 사건을 담당하는 고용변호사와 저처럼 개업을 하여 사건을 수임부터 해야 하는 개업변호사로 나뉘게 됩니다. 개업변호사도 단독 개업인지, 별산제로 다른 변호사님들과 함께 사무실을 쉐어하느냐 나뉘게 되지만, 큰 흐름은 개업변호사와 고용변호사로 나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내변호사와 고용변호사의 경우는 정시 출·퇴근, 야근, 휴가 등 기본 스케줄은 일반 직장인과 다름이 없기에 조금 특이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장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전문성을 키우기 위하여, 또는 자신의 소신을 위하여, 또는 영입의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러한 진로를 선택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러한 점은 여러 분야에 변호사를 진출시켜 선제적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바 로스쿨 도입의 대표적인 선기능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개업변호사는 말 그대로 자신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 대

표라고 보시면 될 듯하며 비법조인분들이 생각하는 고전적인 의미의 변호사를 떠올리시면 될 듯합니다. 선임을 위한 영입과 페이퍼워크의 배분을 본인이 스스로 정해야 하며, 통장 잔고가 허락하는 한 출·퇴근 및 휴가의 계획이 자유롭습니다. 로스쿨 재학생이라면 다 알 만한 이야기를 너무 길게 썼더니 다행히 지면을 다 채워가는 것 같습니다.

이야기가 돌고 돌았지만 처음으로 돌아가 보자면, 변호사가 우리 사회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일은 수없이 많습니다. 각 경찰서 민원상담센터에서 민원 상담을 한다거나, 시청이나 구청, 주민센터의 무료법률 상담에 참여한다거나, (피해자)국선변호사를 한다거나, 또는 각 비영리단체나 공익단체의 활동에 변호사로서 참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일의 대부분은 시간적 여유가 있는 개업변호사들의 영역이며 영입적 측면 역시 반영된 것입니다.

변호사시험 준비를 치열하게 하시다가 문득 제 글이 생각이 난다면, 잠깐이나마 휴식을 취하며 고민을 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내가 법조인이 된 이후, 어떤 법조인이 되어야 할 것인가?”, “어떤 분야에 진출을 할 것인가?”, “그 곳에서 과연 ‘변호사님’이라는 호칭을 들으며 내가 기여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라는 거창한 고민말입니다. 저 역시 오늘 밤 잠자리에 누워 다시 한번 해답을 찾아보아겠습니다. 웬지 그 어느날 보다 빠르게 잠이 들 것 같은 오늘입니다.

P.S. 이건 비밀입니다만,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는 모든 분들은 변호사시험을 한번에 합격할 것입니다.

최지호 변호사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
영남대학교 로스쿨 6기
서울시 공익변호사
관악, 광진경찰서 민원상담센터 자문변호사
풍납1동 마을변호사
대법원, 남부지방법원 국선변호사

수사받는 법



법무법인(유한) 광장

조승연 변호사

[수사받는 법 01 - 경찰서에서 온 전화]

“서울OO경찰서 아무개 수사관입니다. 김철수씨 핸드폰 이지요. 내일 모래 두시까지 경찰서로 나와 주셔야 합니다.”

경찰서에서 전화가 올 일이 없는데 뭘까. 보이스 피싱이구나.

“니가 수사관이면 내가 대통령이다.”

“아.. 또 이러네. 아저씨 보이스 피싱 아니에요. 못 믿겠으면 나오지 마시던가요. 집으로 출석요구서 보냅니다.”

경찰서에서 뭔가 오면 집안에 난리 날 텐데 어떻게 답해야 하지. 당장 경찰서에서 왜 전화를 했는지부터 생각나지 않는다. 경찰관은 맞는 것 같으니 말은 들어야 할 것 같다. 그러던 중 수화기 건너편에서 또 통명스런 목소리가 들려온다.

“김철수씨. 안 들리세요. 내일 모래 두시까지 서울OO경찰서 경제팀으로 출석하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특. 답을 하니 전화는 바로 끊어진다. 뭐라고 물어볼 새도 없이. 도대체 무슨 일이지. 내일 모래면 출장도 있는데 회사에는 뭐라고 얘기해야 하지.

경찰서에서 출석하라고 하면 당황해서 말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드물다. 무슨 일로 조사하는지 물어보지도 못하고, 일정 조정도 못한 채 정해주는 시각에 출석하겠다고 답변한다. 그리고 나선 ‘경찰서에서 연락하는데 당연히 따라야 하는 것 아닌가’, ‘내가 별 잘못된 일도 없는데 꼬치꼬치 따져 물어서 뭐하나 가서 물어보면 되지’라고 생각한다.

당신이 운 좋게도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는다면 별 문제 없을 것이다. 참고인은 다른 사람의 혐의를 밝히기 위해 조사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신이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다면 두고두고 이 시간을 후회하게 될 것이다.

조사 받으러 나오라고 해서 바로 나간다고 답변한 게 뭐 그렇게 잘못된 건가 싶을 수 있다. 물론 잘못된 건 없다. 다만 자신의 권리를 다 찾지 못할 뿐이다. 그리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 당신은 점점 더 어려운 상황으로 빠지게 된다.

그렇다면 김철수씨가 미리 알아봐야 했을 내용은 무엇일까.

먼저, 김철수씨는 자신이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는지,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지, 피의자라면 무슨 죄명으로 조사를 받는지 혐의는 무엇인지에 대해 물어봤어야 했다. 죄명과 혐의를 알아야 내가 어떤 오해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된 해명을 할 수 있게 된다.

두 번째로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정해주는 시간은 기존 일정과 충돌하게 마련이다. 변경하기 어려운 일정이 있다면

경찰관에게 사유를 설명하고 일정을 바꿔줄 것을 요청하면 충분히 일정 변경이 가능하다. 특히, 변호사와 함께 조사받고자 할 경우, 일단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므로 선임을 위해서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면 일정 기간을 기다려 준다.

다만,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출석을 거절할 경우, 수사기관은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여 피의자를 체포하게 된다. 따라서 출석을 무작정 거부하면 좋을 것이 하나도 없다.

[수사받는 법 02 - 왜 불렀을까]

앞 글에서 말한 것처럼 죄명과 혐의를 알아야 제대로 된 해명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당장 경찰서에서 전화를 받고 벌벌 떨고 있는 사람이 무슨 정신으로 자신의 죄명을 파악하겠는가.

친절한 수사관이라면 죄명과 함께 간단히 무슨 이유로 조사하는지 이야기 해 줄 수도 있다. 그러나 보통은 죄명만 이야기 해 주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어떻게 알아봐야 할까.

어떤 사건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는 여러 가지다. 누군가 당신에 대해 고소장 또는 고발장을 작성해서 수사가 시작될 수도 있고, 수사기관에서 직접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도 있다. 첫 번째는 고소(고발)사건, 두 번째는 인지사건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분류에 따라 피의사실을 알아내는 방법이 달라진다.

고소(고발)사건이면 경찰서에 고소장(또는 고발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된다. 누구나 인터넷으로 할 수 있다. 조사 받으러 나오라고 연락한 곳이 경찰서가 아니라 검찰청이었다면 검찰청 민원실에 가서 고소장 등사 신청을 하면 된다. 웬만하면 고소장을 다 복사해 준다.

반면 수사기관에서 진행한 사건(인지사건)은 처음부터 고소장이 없는 사건이기에 무슨 내용으로 수사하는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때문에 경찰서나 검찰에서 전화가 오며 무슨 죄명으로 조사를 하는 것인지 자세히 물어봐야 한다. 자세히 이야기 하진 않지만 대부분 죄명까지는 이야기 해 준다. 그 다음부터는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관계에 죄명을 맞추어 ‘도대체 뭘 수사하고 있을지’ 추론해 봐야 한다.

수사 진행 사실을 압수수색을 통해 알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때에는 수사관이나 검사가 압수수색시 제시하는 영장을

을 잘 보아야 한다. 영장을 제시하지 않고 압수수색하면 나중에 문제가 커지기 때문에 요청하면 영장을 보여준다.

가끔 피의자만 있고 변호사가 없으면 “뭘 자세히 보려고 하나.”면서 통치거나 영장을 잠깐 보여주고 다 읽기도 전에 빼앗아 가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에 영장을 못 봤으니 보여 달라고 다시 요청해야 한다. 그 영장에 어떤 혐의로 조사하고 있는지 자세히 적혀 있기 때문에 보고 외워야 한다.

무조건 외워야 한다. 못 외우겠으면 인상적인 키워드라도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 수사기관에서 직접 수사하는 사건의 경우 영장만큼 어떤 혐의로 조사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수사받는 법 03 -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변호사에게 물어보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로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관들이 직접 당신을 찾아갈 수도 있다. 직접 찾아갈 정도면 보통은 체포 영장이라는 서류를 들고 찾아가지만, 갑자기 “조사할 것이 있으니 따라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

이걸 법률용어로는 ‘임의동행에 의한 조사’라고 한다. 그런데 좀 이상하다. ‘임의’라는 건 내가 알아서 간다는 의미인데, 나는 경찰관이 오라고 해서 가야 하는 줄로만 알고 간 것이지 내가 알아서 가겠다고 한 적은 없지 않은가.

이상하게 느끼는 것이 정상이다. 제대로 된 임의동행을 하려면 수사관이,

“가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이번 기회에 저희와 함께 가서 조사를 받으시겠습니까.”

“조사 받다가 언제든지 나가셔도 상관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당신이 자유롭게 갈지 말지를 결정해서 출석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믿어도 좋다. 내가 아니라 대법원에서 정해진 기준이다.

수사관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야 하는 이유는, 원칙적으로 영장 없이 강제로 사람을 데려갈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영장이 없는 상태에서 같이 가서 수사를 받자고 말하는 것은 당신의 허락을 구하는 부탁이지, 명령이 아니다.

그런데 막상 수사관으로부터 얘기를 들어보면 당장 같이 가지 않으면 일이 날 것이니 당장 뛰어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많고, 명령조로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다.

안 그런 수사관들도 많이 있지만, 만약 그런 식으로 말한다면 그건 피의자를 우습게 보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피의자가 형사 절차에 대해서 잘 모르고, 수사관에게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용해서 적절한 절차를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다.

수사관들은 왜 임의동행을 해서 당신을 조사하려고 할까. 갑자기 들이닥쳐서 경찰서로 끌려가면 일단 정신이 없다. 뭘 추궁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가족들에게 회사에 뭐라고 이야기 할지도 생각나지 않는데 설 사이 없이 물어본다. 그리고 사방에 수사관들이 천치인 경찰서, 검찰청 안은 분위기부터 사람을 위축시킨다. 여기저기서 고성이 난무하고, 조사 받는 사람들은 모두 죄인처럼 혼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할 수 있겠는가. 그것도 자신의 혐의가 뭔지도 제대로 모르는 상황에서. 게다가 수사관이 가자고 하니가 넘죽 따라가는 사람들은 조사 받으면서 변호사를 선임할 생각조차 하지 못한다. 변호사 선임할 정신이 있었으면 아마 애초에 경찰서에 가자는 요구에 응해서 따라가지도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경찰서에 가서라도 정신이 들었다면 반드시 변호사를 불러달라고 해야 한다!

사람에 따라서는 경찰서에 가서 빨리 조사 받는 게 더 편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도록 하자. 길거리에 껌 뱉는 정도의 경범죄가 아닌 이상, 빨리 조사 받는 게 더 편한 경우는 없다.

물론 당신이 안 가겠다고 하면 수사관들은 “별거 아니니까 빨리 조사 받고 끝냅시다.”라고 대수롭지 않게 또는 짜증내며 말을 할 것이다. 그런데 정말 별것도 아닐 것 같은가. 수사관에게는 정말 별것도 아닌 일일지 모른다. 그러나 당신은 바로 그 조사 때문에 인턴원에 있는 서울구치소나 송파에 있는 동부구치소에 가게 될 수도 있다. 그래도 수사관에게는 별일 아니기는 마찬가지다. 수사관이 구치소에 갇히는 것은 아니니까.

경찰서에 가서 빨리 조사를 받아도 될 일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렵다. 보통 사람들에게 조사는 평생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러 번 조사를 받아 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조사를 빨리 받아야 하는지 아닌지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다.

때문에 당신은 이 말을 외워두어야 한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변호사에게 물어보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수사관이 화를 내면서 뭘 잘못을 했는데 변호사에게 물어보냐. 당장 시원하게 조사를 못 받는 이유가 뭐냐. 빨리 튀어오지 않으면 당장 영장을 받겠다 라는 등등의 이야기를 해도, 당신의 답변은 오직 한 가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변호사에게 물어보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다른 말을 하지 말고 저 말만 무조건 반복하라. 그리고 나서 변호사에게 사건에 대해서 조언을 들어야 한다. 변호사들 먹고 살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다. 이 말을 듣지 않고 수사관 말만 믿고 그대로 들어가서 조사 받다가 신세를 망친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이 봐왔다. 아무런 조언 없이 조사를 받다간 오해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이다. 물론 내 말을 듣지 않아도 된다. 억울한 죄명을 뒤집어 쓰거나, 막대한 변호사비를 쓰는 것에 개의치 않는다면 말이다.

[수사받는 법 04 - 체포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경위를 불문하고 체포되었을 경우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다. 변호사 오기 전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다. 아니 내가 잘못된 것도 없는데 사실대로 말하면 풀려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다시 한 번 생각해보라. 수사기관에서 당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면 왜 체포를 했겠는가. 바쁜 사람들이, 괜히 체포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실제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다. 잘못 여부를 떠나 수사기관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수사기관은 자신의 생각에 따라 수사를 진행한다. 즉, 아무런 방비를 하지 않고 수사를 받으면 당신은 수사기관의 의도에 맞춘 진술을 하게 된다. 내가 잘못 한 게 없는데 뭐 어떡냐고? 그게 이 글을 쓴 큰 이유 중 하나다. 이미 왜곡 가능성이 있는 진술을 하고 와서는

“저는 그렇게 말 안 했어요!”

“분위기에 휩쓸려서 빨리 경찰서에서 나오고 싶어서 그렇게 말했는데.. 후회됩니다.”

라고 하소연하는 사람을 너무 많이 봤다. 그리고 그 조서는 아무리 해도 없앨 수가 없다. 작성 완료되는 순간 이미 경찰, 검찰 전산망에 등록되어 수사관이 지워주고 싶어도 지울 수가 없다. 그리고 나중에 와서 좀 봐달라고 해도,

“그러게 왜 그렇게 진술했어요. 아예 진술을 하지 말지. 저희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라는 말만 들을 뿐이다.

진술을 취소한다고 얘기하면 없앨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묻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 건 없다. 처음 진술은 그대로 남아 있고, 그 진술을 반복하는 내용의 진술이 추가 될 뿐이다. 그리고 이렇게 진술이 오락가락하면 경찰, 검찰 뿐만 아니라 법원에서도 그 진술을 잘 안 믿어준다.

내가 그렇게 진술 안했는데 잘못 적혔으니, 아니라고 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경찰에서 작성한 조서(수사기관에서 피의자나 참고인들을 불러 조사를 하고, 그 내용을 적는데 이를 ‘조서’라고 한다)는 법정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고 말하면 재판에서 사용하지 않는다. 다행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경찰 작성 조서가 법원으로 가기 전에 검찰에 먼저 도착한다는 것이다.

이해를 위해 수사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자.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은 경찰관들이 수사를 한 뒤, 검찰청에 수사한 기록과 혐의에 대한 자신들의 의견을 적어서 보낸다. 이를 ‘송



지’라 한다.

이 기록 중에 경찰 작성 조서가 있는데 검사는 이 조서를 보고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파악하고, 그 조서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조사를 하게 된다. 즉, 경찰 작성 조서는 검찰 작성 조서의 바탕이 된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경찰 작성 조서는 법정에서 내가 그렇게 진술하지 않았다고 말하면 재판에서 쓰이지 않지만, 검찰 작성 조서는 다르다. 내가 그렇게 진술한 적이 없다고 말하더라도 웬만하면 재판에서 사용된다.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검찰 조서도 아니라고 말하면 사용되지 못하도록 바뀌었는데, 4년 내에 시행하도록 하여 유예기간이 길기 때문에 현재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 내용이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된다. 처음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이상한 내용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 그 조서 내용이 남아 유죄가 나올 때까지 피의자를 괴롭히는 것이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변호사 오기 전까지는 절대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한다. 변호사가 오기 전까지 진술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문제 삼지 않는다.

회유가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그 회유에 빠지는 순간 잠깐의 편안함과 앞으로의 전과와 수형생활 또는 벌금을 맞추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 후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9기

김민정

I. 선택형 공부법

저는 변호사시험 총 150개의 선택형 문제 중 110개 이상을 맞췄다는 목표를 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사례형이나 기록형에서 고득점을 낼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특정 영역에서 구멍이 나는 일이 없이 '선사기 모두를 평균만 하자!' 는 느낌으로 선택형 110개 정도를 목표로 잡게 되었던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변시에서는 107개를 맞았습니다.

선택형 대비 수험서는 문제와 해설이 별개의 책으로 분리되는 M社의 교재를 사용했습니다. 시중에 출판사별 기출문제집이 다양하게 나오는데 저의 경우엔 문제 바로 밑에 답이 기재되어 있는 편집은 문제를 풀기도 전에 답을 계속 보게 되어 공부 효과가 전혀 나지 않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선택형의 경우 본인에게 맞는 기출문제집을 빨리 선택하여 시험 전까지 쉬지 않고 반복 학습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는 3학년 1학기가 시작하자마자 동기들과 선택형 스테디를 구성하여 전과목 선택형 기출문제집을 6월 모의고사 전까지 1회독 할 수 있는 스케줄을 짰습니다. 중간·기말고사 기간을 빼면 6모 전까지 14주의 시간이 확보되었고 이에 따라 모든 과목의 기출문제집을 14주 분량으로 쪼개 매주 해당 주의 분량을 풀고 인증하는 방식으로 스테디를 진행했습니다. 그 주의 분량을 마치지 못하면 과목당 벌금을 내는 페널티를 통해 강제성도 부여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6모 전까지 지금까지의 변시/변모 기출문제 전부를 한 번씩 풀어보게 되었고 틀린 문제들은 해설집에 따로 형광펜 표시를 해서 회독수를 늘릴 때는 틀린 문제 위주로 학습했습니다. 2학기 때는 3개년 최신 판례 인강 위주로 선택형 대비를 했기 때문에 문제 풀이에 큰 시간을 할애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변시 한 달 전인 12월부터 실제 시험문제 그대로 인쇄된 회차별 문제를 시간 내에 푸는 연습을 했고 이 때는 변모는 제외하고 변시 기출문제들로만 학습했습니다. 하루에 1회차씩 공민형 기출문제를 모두 풀었고 채점 결과 맞은 문제가 110개가 꾸준히 넘기 시작했습니다. 틀린 지문들은 암기장에 모두 빨간색으로 표시해서 시험 직전까지 봤던 기억이 납니다. 출제되는 모든 지문을 이해할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방대한 양을 너무나 부족한 시간에 공부해야 하는 변시의 특성상 최대한 기출 지문 및 판례의 문구를 눈에 많이 발라서 실전에서 오선지를 빠르게 걸러낼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점수를 올리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제한된 지면 관계상 모든 내용을 담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kmj35765@naver.com 으로 문의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는 것이 점수를 올리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II. 사례형 및 기록형 공부법 공법

공법은 제 나름의 주력과목이었습니다. 공형민 중 유일하게 A+를 받았던 강의를 헌법과 행정법이었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공법만큼은 잘 쓸 수 있다는 자기최면을 걸며 준비했습니다. 변시에서도 공법은 55~60점대의 점수를 득점하여 합격을 견인한 과목이 되어주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로3 전 겨울방학 때부터 기출문제집 해설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면서 시험장에서 답안지에 반드시 현출 하여야 하는 키워드를 암기장에 모두 표시하는 방식으로 공부했습니다. (tip : 이 방법은 민사와 형사 모두 동일하게 진행했습니다. 나중에는 암기장에 표시된 것 봐도 기출된 사례 사안이 떠오를 정도로 반복했습니다.) 이 밖에도 기출 사례 및 기록 문제를 실전처럼 매주 풀어보는 연습 과목을 수강하면서 답안지 쓰는 감각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1,2학년 때 공법 공부를 상당 부분 끝내놓아 3학년 때 상대적인 공부 시간을 줄이면서도 실전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은 것이 나름의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형사법

슬프게도 형사법은 정말 잘 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눈 점을 벗어나거나 득점할 수 있는 키워드를 누락하게 되면 표준점수가 후두둑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저의 경우 변시에서는 형사 1문에서 정말 부끄러운 점수를, 형사 2문과 기록형에서 50점대의 점수를 받았는데 개인적인 분석으로는 형사소송법에서 점수를 최대한 깎이지 않고 형법 쟁점에서 어느 정도의 배점을 획득할 수 있는가가 관건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최근 기출문제의 경향 및 9회 변시에서도 형법총론 쟁점이 출제되었으므로 각론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해지기 쉬운 총론 쟁점 역시 사례형으로 출제되었을 때 답안지에 어떻게 기술해야 할지를 늘 염두에 두고 빠짐없이 공부하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형사 기록형의 경우 갈수록 시간 내에 쓰기 벅찬 양이 출제된다는 판단 하에 평상시 시험 시간인 2시간이 아닌 1시간 30분 정도 안에 답안지를 써내는 연습을 했었는데 이 방법이 시간 단축에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민사법

저는 학교 시험에서 C를 종류별로 수집할 정도로 민사법이 취약했습니다. 불행 중 다행히도 상법은 민법이나 민소법에 비해 점수가 잘 나오는 편이어서 모의고사부터 변시까지 민사 1문을 시간 내에 끝내놓고 상법인 민3문으로 바로 건너뛰어 50분 내에 상법 답안지를 완성하고 민2문에 남은 시간을

모두 쓰는 방법을 택했고 결과적으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기록형의 경우 워낙 민사법 실력이 부족하다 보니 최대한 많은 청구취지 형식을 모조리 외워버리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시험장에서도 메모를 쓰는 시간을 줄이고 각 피고별로 청구취지(결론)를 떠올리면 바로 답안지에 써내려가는 방식으로 풀었고 청구원인 및 피고 항변의 부당성은 청구취지에 거의 끼워 맞추다시피 했습니다. 점수는 90점대 후반이 나왔고 어느 정도 효과를 보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변호사시험 공부를 하는 모든 분께서 공감하실 부분이 "민사법은 정말 질릴 정도로 양이 많다" 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방대한 양에 한 번, 낮은 학점에 또 한 번 질려 민사법 공부 자체를 외면한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변시는 어느 한 부분이 라도 구멍이 나면 합격과는 빛의 속도로 멀어지는 시험입니다. 학점이 낮더라도, 모의고사 점수가 생각만큼 나오지 않더라도 자신을 달래가며 시험장까지 어떻게든 붙들고 가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III. 마치며

저는 형사법 시험을 마친 당일 어머니께 전화하면서 시험을 중도 포기하고 싶다고 평평 울었을 정도로 제 답안지에 자신이 없었습니다. 응시자 대부분이 하는 선택형 채점조차 하지 못한 상태로 합격자 발표를 기다렸고 점수가 나온 후에야 맞은 개수를 알았어요. 사실 아직도 제가 합격한 사실이 실감이 나질 않습니다. 같이 준비한 친구들이 없었다면 끝까지 버티지 못했을 것 같아요. 너무 짧은 말이지만 자신을 믿고 마지막까지 조금만 더 힘을 내세요!!!

나도 어느새 '로퀴'?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1기

유영훈

어느 날 아침 그레고르 잡자가 불안한 꿈에서 깨어났을 때 그는 침대 속에서 말의 흉측한 갑충으로 변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

프란츠 카프카, <변신> 중

1. '로퀴'란?

로스쿨 학생들은 별로 환영받지 못한다. 각종 오해들, 혹은 사실들로 인해 비난을 많이 받는다. 대표적으로 대학 커뮤니티 등에서 로스쿨생들을 비하하는 말로 '로퀴'가 있는데, 이는 '로스쿨'과 '바퀴벌레'를 합친 말이다. 그 말의 기원은 정확히 찾을 수 없지만, 주로 이 단어를 쓰는 사람들의 인식을 분석해보니 로스쿨생들이 과도하게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혹은 자신의 공부를 위해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종종 보이기 때문인 것 같다.

2. 로스쿨 내부에서의 용례

그렇다면 로스쿨 내부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생각보다 내부에서도 이 단어가 많이 쓰인다. 아니 어쩌면 커뮤니티가 아닌 입 밖으로 '로퀴'라는 단어를 자신있게 내뱉는 사람들은 9할 이상이 로스쿨생일 것이다. 원래 누군가를 비하하는 용어가 농담이 되려면 스스로가 해야 한다.

로스쿨생들은 로퀴를 해학적으로 승화시켜 받아들이고 있다. 전국 로스쿨에 통용되는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필자의 로스쿨에서는 적어도 두 가지 의미로 희석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 같다.

첫 번째로, 어딜 가나 보이는 로스쿨생들의 모습 때문에 서로를 로퀴라고 부른다. 로스쿨 건물과 도서관은 물론, 근처 식당이나 카페, 심지어 로퀴를 피하기 위해 조금 무리해서 멀리 나가도 서로를 피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시험기간에는 공부에 몰두하느라 학교 밖을 벗어나기 어렵고, 시험기간이 아니더라도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는 로스쿨생들은 기껏해야 학교 근처 시설을 이용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마음을 먹고 멀리 간다고 해도 거기서 거기다. 또한 실제로 약간의 시간적 여유가 있더라도, 웬지 마음 속 한 칸에 공부를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이미 자리한 로스쿨생들은 그 시간을 보내는 방법이 굉장히 제한적이다. 따라서 카페 혹은 맛집, 코인노래방 등 외에는 별로 모습을 보일 수 없다. 그래서 서로를 잘 발견하게

되고 소름이 돋게 되는 것이다.

두 번째로, 로스쿨생 '티'가 날 때 서로를 로퀴라고 부른다. 주로 한정된 공간(학교)에 있다보니 외부와의 접촉이 적고, 한정된 행위(법공부)만을 주로 하다보니 생각하는 것도 비슷해진다. 따라서 입학하기 전에 각자 개성이 있던 모습과는 다르게 '전형적'인 로스쿨생이 되어간다. 법 공부에 최적화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다. 필자도 로퀴라는 단어를 남 일처럼 생각하며 살다가, 글 서두에 언급했던 그레고르 잡자처럼 어느 순간 스스로가 로퀴임을 깨닫게 되었다. 이하에서는 그 모습들을 간략히 소개한다.

3. 로퀴의 모습

가. 패션의 변화

정식으로 로스쿨 1학년이 되기 전, 동기들과 함께 '예비학교'에 모여 교수님들의 법학 입문 강의를 들었었다. 동기들과의 첫 만남이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 설레기도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놀랄 정도로 다들 가지각색의 패션과 스타일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1학기 중간고사가 되자, 모두 똑같이 학생회에서 나누어준 후드티와 각자의 - 그러나 웬지 비슷한, 어두운 계열의 - 트레이닝 바지를 입고 시험을 보았다. 마치 진시황이 도량형을 통일한 것처럼 1학기 중간고사는 우리의 패션을 비슷듯이 통일시켰다.

이후 시험기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은 지속되었다. 어느날 옷장을 열어보니 언제나 주인으로부터 선택을 받아 당당했던 예쁜 옷들은 그저 편한 옷들에 밀려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다. 필자와 비슷하게, 똑같은 디자인의 옷을 색깔만 다르게 5벌을 사서 월화수목금 입는다는 친구도 있었다.

앞으로 법조인이 되면? 정장을 입고 일하는 사람들이 95% 이상일 것이다. 우리의 개성은 끝났다.

나. 언어의 변화

사용하는 언어가 많이 달라진다. 로스쿨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학사학위가 요구되므로 갖 입학한 로스쿨생들은 각자 학부에서 열심히 공부를 했을 것이고, 국어능력 뿐만 아니라 자연스레 영어능력도 길러졌을 것이다. 그러나 한자로 점철된 법전을 보고, 알파벳이라고는 간혹 보이는 독일어뿐인 현실에 영어능력이 퇴화한다.

더욱 놀라운 점은 한국어 능력도 조금은 퇴화한다는 사실이다. 아마 일상적으로 잘 쓰지 않는 표현들을 암기하고 또 직접 사용하기 때문인 것 같다. 이제는 점점 일상용어와 법률용어의 구분이 모호해진다. 예를 들면, '통치자'라는 말 대신 '상계하자'라는 말이 더 자연스럽게 나온다거나 '최고'라는 말을 들었을 때 가장 높다(좋다) 혹은 가장 오래되었다는 뜻이 아닌 다른 뜻(재

촉하는 통지)이 먼저 생각난다면 로퀴가 될 준비를 마친 것이다.

또한 앞서 언급한 예비학교 때만 해도 교수님들의 '법률용어' 개그에 억지로 웃었는데, 이제는 똑같은 농담에 정말로 웃음이 실실 터지고 만다. 더 나아가서, 직접 법률용어 개그를 만들기도 한다. 교수님께서 처음에 '형법'과 '동생법' 이야기를 하셨을 때의 아찔한 기억은 여전하지만, 이제는 심지어 '형소법'과 '동생말법'을 들어도 새어나오는 웃음을 도무지 억제할 수가 없다.

4. 마치며

요새 로스쿨 친구들과 자조가 담긴 한탄을 하곤 한다. 외부에서 본다면 이것 역시 로퀴의 모습의 일종이겠지만, 고된 시간 속에서 '이렇게 굳이 힘든 길을 걸어야 할까?'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기는 정말 어려운 일이다. 공부도 힘들뿐더러 법조인이 되어서도 부단히 노력해야 하는 현실을 쳐다보고 있노라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어려운 삶을 선택한 자신을 책망할 때가 있다. 그러나 좋건 싫건 우리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링 위에 올라섰다. 2학년이 된 이상 사실 이 선택을 돌이키기도 애매하다.

로스쿨 도입 취지 중 하나는 법조인의 수를 늘려, 법률 서비스에서의 소외계층이 없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어쩌면 로퀴들은 이를 미리 연습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향후 법조인이 되어서도 ①법률서비스가 필요한 곳이면 언제 어디서나 존재하고, 또 ②항상 머릿속에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지식과 의지가 가득한 '로이어(lawyer)-바퀴'로 진화한다면 지금의 로퀴생활이 이보다 더 뿌듯할 수는 없을 것이다. 지금은 비록 로퀴지만 언젠가 빛날 록키를 꿈꾸며 오늘도 하루를 채운다.

대학의 정원감축이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원감축의 근거가 될 수 없는 이유

– 교육기관의 운영에 이익단체가
간섭하려 해서는 안된다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양필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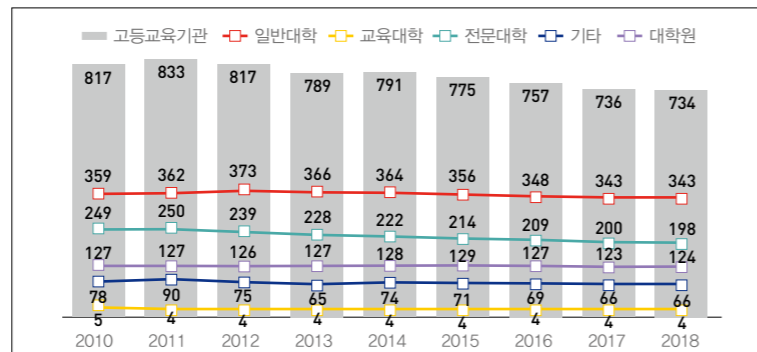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원문제는 '뜨거워지게 하고 싶은 감자'이다. 변호사 업계에서는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를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주장할 때 마다, '선 정원축소 후 자격시험화'를 주장하기 때문이다(그래서 뜨거운 감자가 아닌, 뜨거워지게 하고 싶은 감자이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모 언론사에서 로스쿨출신 청년변호사 협회의 협회장이 '(입학)정원 감축을 전제'로 자격시험화를 주장하는 것을 들 수 있다.

(<http://www.ltn.kr/news/articleView.html?idxno=26505>)

학부생의 총원이 감소하면 대학원생의 총원도 감소하는 것일까

위 단체가 로스쿨의 정원을 감축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주요한 근거는 1. 대학도 학생 수가 크게 감소하고 있다, 2. 머지않아 대학원의 정원도 감소할 것이다, 3. 따라서 로스쿨도 구조조정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 주장은 타당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이는 사실이 아니다. 그 이유는 교육부 2018년에 작성한 '교육기본통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18 교육기본통계에 따른 고등교육기관 입학자 수의 변화]



위 도표를 통해 알 수 있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고등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수는 2011년 83만 7천 명에서 2018년 73만 4천명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감소의 속도도 꾸준하여 매해 약 10만명 가량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로 일반대학의 입학생 수도 2012년 37만 3천 명에서 2018년 34만 3천명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기타 교육기관의 경우에도 2013년 90만을 정점으로 하여 2018년에는 66만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그러나 대학원의 경우에는 상황이 다르다. 대학원의 경우에는 2015년에 12만 9천명을 정점으로 2018년에는 12만 4천명이 입학하여 위에 언급된 집단들과 비교할 때 감소 폭이 적다. 또한 변화의 추이도 일관된 것이 아니라 12.4만에서 12.7만 사이를 오가고 있다.

결국 고등교육기관 입학자 감소 수치 9만 9천중에서 대학원생이 차지하는 감소 수치는 3천 명에 불과하다. 이는 전체 수치의 3%에 불과하다. 더불어 대학원생의 인원의 등락이 꾸준하게 하향세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상승세와 하강세가 보인다는 점에서 대학원생의 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지적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위 법조인 단체가 학부생이 감소한다고 대학원의 정원감축을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중등교육기관에서 고등교육기관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능을 보아야 한다. 이는 직장을 다니거나 사회생활을 하거나 나이가 많아진 경우에는 하기가 힘든 행위이다. 그러나 대학원의 경우에는 학부를 졸업한 사람은 전부 대상이 된다.

즉 매해 수능을 볼 가능성이 있는 모집단의 수(고등교육기관에 입학하려는 자)는 인구감소로 인하여 줄어들지만, 대학원에 입학가능한 대상자는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는 청소년의 수가 감소하여 대학의 정원이 감소하여도 대학원의 정원은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중등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하려는 전체 학생수가 감소한다고 하여도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학교들은 전국에 주요 대학들로서 입학생 감소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위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이는 대학원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된다. 대학원에 입학하는 사람의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설사 감소한다고 하여도 법학전문대학원이 있는 학교의 대학원생이 감소할 확률은 매우 낮다.

이는 지난 10년간 법학적성시험을 보는 사람들의 증감폭을 확인하여도

알 수 있다. 법학적성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의 수는 5회째 크게 감소하였다가 다시 큰 폭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작년 법학적성시험의 응시자 수가 만명을 돌파함으로써 증가세가 확연함을 입증하였다.

특히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할 희망하는 사람의 수는 인구감소와는 상관없이 외부적 환경(사법시험준치와 관련된 논쟁 및 대외의 인식)이 더 큰 영향을 주었다. 이는 사법시험의 폐지가 확정된 이후 위 시험의 응시자가 약 2천 명 가량 증가했다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또 법조인양성과정이 일원화 되었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응시자가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 인식이다. 결국 위 단체의 주장은 근거 없는 것에 불과하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원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이들은 '법률서비스의 사회적 대중화' 혹은 '기회의 확대'라는 공공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특히 법학전문대학원이라는 사회적 제도를 통해 법조인이 된 자들이 이러한 주장을 한다는 것은 '자아부정'이며, 자신들의 삶의 기반을 마련해 준 제도에 대한 배신이라는 점을 그들은 명심할 필요가 있다.

더하여 교육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이익단체가 관여하려 하는 것은 교육기관의 근간을 해할 수 있는 행위를 그들은 알 필요가 있다. 그들이 해야 할 것은 '교육기관에 대한 정원감축주장 혹은 간섭'이 아니라 '아낌없는 지원'임을 그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내 손으로 만드는 따뜻한 세상 제9회 동천 공익·인권 프로그램 제안대회

재단법인 동천은 매년 <동천 공익·인권 프로그램 제안대회>를 주최하여 예비법조인들이 공익·인권 분야 및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올해에도 많은 학생들이 대회에 참가해 자신들이 만든 프로그램을 제안하며, 더 나은 세상을 꿈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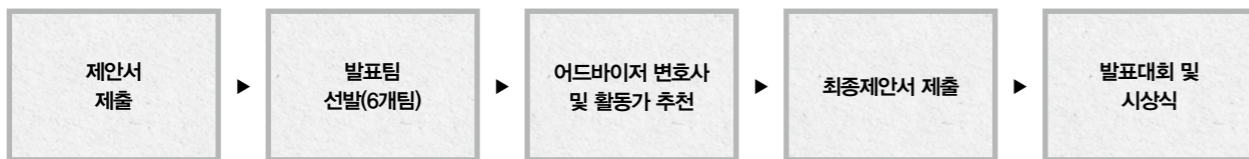


■ 참가 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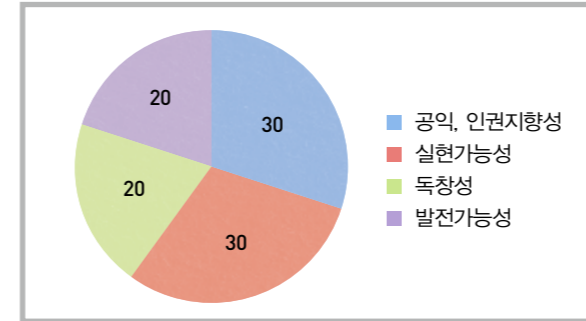
- 사법연수원 연수생 및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휴학생 포함)
- 최대 5명 이내의 제안팀을 구성해 참가(개인 참여 가능하나 팀 구성을 추천함)

※ 학부생, 공익단체 활동가 등과 연합하여 팀을 구성하는 것도 가능(단, 팀 내 사법연수생 및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의 수가 2/3 이상이어야 함)

■ 프로세스



1차 심사를 통과한 6개 팀은 약 한달 동안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및 시민사회 활동가의 멘토링을 받으며, 기획한 제안서를 발전시키고 구체화하는 작업을 한다. 동천은 각 팀이 발표한 내용을 더욱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팀마다 어드바이저 변호사와 멘토활동가를 추천하고, 멘토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 심사 기준

- 심사위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공익활동위원회 변호사, 공익변호사, 시민단체 활동가, 언론사 등 외부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 공익·인권지향성, 실현가능성, 독창성, 발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심사를 진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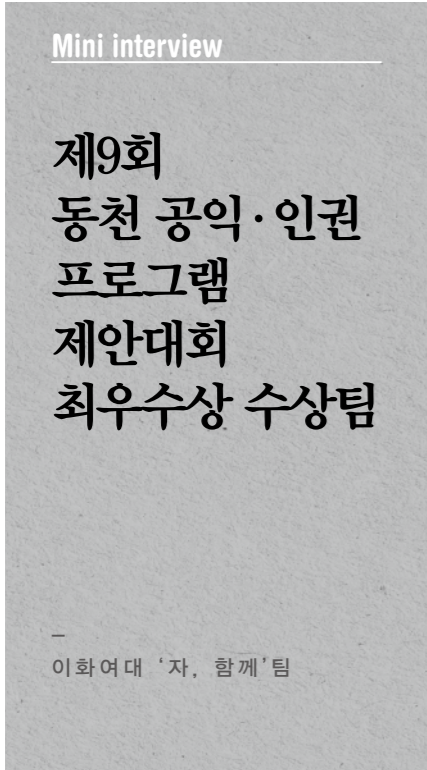
■ 수상 내역

팀명	소속	프로그램	수상결과
자, 함께(자립, 함께할래?)	이화여대 로스쿨	Surfing(Surf Your Future)	최우수상
팀 알바고(AlbaGo)	서울대 로스쿨	아르바이트 전문 법률 상담 챗봇: 알바고(AlbaGo)	우수상
아키비스트(Archivists)	이화여대 로스쿨	Asylok(어싸일록)	우수상
나침반	아주대 로스쿨 성폭력상담소	디지털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나침반	장려상
서강대학교 공익인권법학회	서강대 로스쿨	정책 당사자의 관점에서 스스로 구현하는 "UN아동권리협약"	장려상
등곳길의 손난로	서울대 로스쿨 연세대 로스쿨	이주배경아동을 위한 법률의견서, 매뉴얼 제공 및 생활법률교육 실시장려상	장려상

동천은 최우수상 수상팀에게는 상금 200만원, 우수상을 수상한 2팀에게는 각 100만원씩의 상금을 전달하고, 우수 제안팀들이 실제 프로그램 진행을 희망할 경우 활동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각 팀 당 최대 300만원의 공익인권활동 프로그램 진행비를 지원한다.



심사위원을 맡은 사회복지법인 '함께걷는아이들'의 유원선 사무국장은 "6개 발표팀 모두 많은 고민을 통해서만 문제의식을 느낄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하고 발표해 심사위원들 사이에서도 많은 논의가 오갔다"며 "지금 기획한 활동들이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물론 졸업 후 법조인이 되어서도 공익 분야에 큰 기여를 하는 '비영리 분야의 공공재' 같은 멋진 법조인이 되길 기대한다"고 심사소감을 밝혔다.



윤지효 변호사님께도 감사인사 전하고 싶습니다!

팀원 구성은 어떻게 했나요? 팀원들이 함께 모여서 출전하게 된 계기도 궁금합니다.

▶ 김소연

제가 먼저 대회 공고를 보고 팀원을 모으기 시작해서 얼떨결에 팀장이 되었는데요. 시험기간에도 틈틈이 이화여대 로스쿨 공익인권법학회 친한 동기들에게 권유해서 같이 대회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조합을 고려해서 모은 것은 아니었는데, 대회 준비를 하면서 저희 5명의 MBTI가 다르고 성격의 합이 정말 잘 맞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작은 갈등 하나 없이 방학 내내 같이 열심히 해준 팀원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팀명 '자, 함께'에는 어떤 뜻이 담겨있나요?

▶ 김현정

'자, 함께'는 '자립, 함께 할래?'의 줄임말입니다. 보호대상아동은 현재 아동복지법 제16조에 의해 만18세가 되면 강제로 보호기관에서 퇴소해야 합니다. 홀로 해내기 어려운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도록 저희 팀이 옆에서 함께 돕는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대회에 제안했던 프로그램을 소개해주세요!

▶ 김현정

저희가 제안한 프로그램은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돕는 프로그램으로 이름은 SURFing(Surf yoUR Future)입니다. SURFing은 두 가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파도치는 바다와 같은 세상으로 나아간다는 의미입니다.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이 멘토가 되고 보호종료를 앞두고나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이 멘티가 되어 2대2 맞춤형 법률멘토링을 진행합니다. 보호종료아동이 자립시 가장 어려움을 겪는 주거 분야의 경우, 멘토가 같이 집을 보러 다니고, 계약서 작성을 돕는 등의 활동을 합니다. 만약 법률적인 문제를 겪는 멘티가 있다면, 간단한 상담을 해주거나 필요한 경우 법률구조공단 등의 기관에 연계해줍니다.

둘째, 정보의 바다에서 자립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다는 뜻입니다. 온라인 콘텐츠 담당 멘토를 모집하여 자립에 필요한 정보를 담은 정기적인 카드 뉴스를 제작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합니다. 인스타그램 등에 상시적인 온라인 채널을 구축하고 운영합니다.

'자, 함께'팀이 제안한 프로그램이 현실화 될 경우 기대되는 효과와 사회

수상 소감은?

▶ 김소연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조사를 하며 꼭 저희 프로그램을 실현시키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하게 들었는데 실제로 우승해서 그 기회가 주어져서 정말 기쁩니다. 저 같은 경우 팀원들 간에 공익에 대해 생각하는 가치관이 비슷하다고 느껴졌는데 같이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 내내 무언가 벽차오른다는 감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수상함으로써 그런 감정에서 나온 결과까지도 꽤 괜찮다는 격려를 받은 것 같아서 힘이 났고, 법조인이 되어서도 이 마음을 잊지 말자고 다잡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따뜻한 멘토링으로 저희에게 큰 힘을 주셨던 법무법인 태평양

적 가치에 대해서도 이야기 해주세요.

▶ 남경은

우리 사회 청년들의 사회 진출 연령은 늦어지고 있는 데에 비해, 보호종료아동은 불과 만 18세에 혼자 힘으로 세상에 나아가야 합니다. 해당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보호종료아동에게 실생활에 밀접한 조언과 정보를 제공하고 정서적 지지기반이 되어 줌으로써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사회의 측면에서도 전국에 분포해 있는 각 법학전문대학원과 해당 지역 아동 보호시설의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의 상생과 유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각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실행되고 있는 다른 공익프로그램에 더하여 지역사회의 공익에 기여함으로써 법학전문대학원이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닌 사회적·공익적 기관으로 기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가적으로도 보호종료아동의 자립과정에서의 시행착오를 줄임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지원 대책이 미비한 현실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자립 시기를 21세로 상향 조정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핑(Surfing)>은 이러한 문제의식과 결을 같이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정부의 보호종료아동 대상 복지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대회를 준비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다면 무엇이고, 어떻게 극복했나요?

▶ 정주은

아무리 자료를 찾아봐도 보호종료아동이 겪는 현실적인 법률 문제가 무엇인지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보호종료아동



당사자이자 현재는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활동가로 계시는 신선남께서 저희의 멘토 활동가로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어떤 법률적인 문제와 제도적 문제점이 있는지 알려주셔서 프로그램을 알차게 설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의 아동자립지원단에서 자문을 받아 프로그램 진행의 행정적인 문제도 보완할 수 있었습니다. 멘터를 모집하는 방식과 프로그램 진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알려주셔서 프로그램의 실현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프로그램을 현실화하는데 있어서도 신선님, 아동자립지원단, 기타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본 대회를 통해 배운 것은 무엇인가요?

▶ 문병하

인권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이를 조화시키는 법을 배웠습니다. 팀원들이 같은 대상을 두고도 어떻게 도와야할지 의견이 다 달랐거든요. 물질적인 도움이 우선이라는 팀원도 있었고 정서적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팀원도 있었습니다. 각자가 생각하는 세부적인 프로그램 계획은 훨씬 다양했어요. 그러나 보호종료아이들에게 도움이 되어야한다는 목표가 있기에 각자의 의견을 조금씩 반영하여 멘토링 프로그램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대회를 준비하는 로스쿨 학우들에게 따뜻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 문병하

준비한 만큼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대회입니다! 대회에서 순위를 넘어 정말로 자신이 만든 프로그램을 실현시킬 수 있는 기회거든요. 어떤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지, 실제로 그 사람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거기다 마음이 맞는 팀원까지 만난다면 즐겁게 대회를 준비할 수 있을거예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어”

공부만 하기에 부족한 시간에 고려대 로스쿨 학생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 비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유를 묻자,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타인을 위해서 가까이 자신의 귀한 시간을 나눌 수 있는, 선량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대답이다.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1기 김서래입니다. 2019년 3월에 입학해서 이제 로스쿨 생활한지는 1년 정도 되었고,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회장으로 열심히 활동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학부 시절 전공과 당시의 꿈에 대해 이야기해주세요.

학부 시절에는 정치외교학을 전공했습니다. 초, 중, 고등학교 때부터 항상 반장, 회장 등 제가 속한 공동체에서 공적인 일을 하다보니 자연스럽게 장래에도 국가의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국가 작용에 대해 심도 있게 공부를 할 수 있겠다는 기대로 정치학과에 진학했고, 실제로 정치학을 공부해서 공직으로 나아가고 싶었어요.

로스쿨에 진학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2017년 초쯤부터 ‘로스쿨에 가서 법을 공부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때가 한창 뉴스를 틀 때마다 ‘대통령이 탄핵된다, 안 된다. 맞다, 틀리다’에 대해 치열하게 토론하던 시기였는데 패널들을 보면 항상 변호사들이 법조인의 관점에서 해석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사회의 어떤 현상에 대해 평가할 때 개인마다 자신의 가치관에 따른 다양한 판단기준이 있을 것이고, 그것들 중 어느 것이 맞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다양한 기준 속에서도 모두가 납득하고, 또 납득해야만 하는 단 하나의 기준이 있다면 그게 바로 ‘법’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이슈에 대해 주장하고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려면 법을 반드시 알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

었습니다. 또 그런 판단들을 통해 제가 생각하는 더 나은 사회, 더 나은 국가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법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 비대위원장을 맡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법학협’은 어떤 단체인가요? 비대위원장으로 서 진행한 활동에 대해서도 소개해 주세요.

법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는 로스쿨 관련 주요 이슈들에 대해 상호협력하여 대응하는 단체입니다. 정기적으로 각 학교 학생대표자들이 모여서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초 비대위원으로 호선된 이후에 주로 논의했던 것은 ‘로스쿨 제도 정상화’입니다. 현재 로스쿨 제도는 도입 취지와는 상당히 괴리된 모습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로스쿨이 법조인 교육의 장으로서 제 기능을 못하고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50%밖에 되지 않는 변호사시험 합격률 때문이고요. 이런 제도 아래서 피해는 고스란히 그 제도 위에 놓여있는 로스쿨 재학생들과 더 나아가 일상생활에서 편리하게 법률서비스를 향유해야 하는 우리 사회의 모든 국민들에게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로스쿨 현실에 대해 재학생들의 목소리를 모으고, 법무부 등 관련 부처에 전달하여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재 법학협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목표이자 과제입니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올해부터는 법학협을 네 개의 팀(문건작성팀, 언론대응팀, 서기총무팀, 자치행사팀)으로 나누어서 운영하고 있고, 전국 로스쿨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서명, 변호사 시험 합격률 정상화 시위에 대한 총투표 등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1기

김
서
래

학
생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현재는 모든 것들이 중단된 상황이지만, 이번 사태가 조금 해결되면 다시 열심히 준비해보야죠.

공부만으로도 부족한 시간일 텐데 선뜻 법학협 비대위원장과 고려대 로스쿨 학생회장직을 맡은 이유도 궁금합니다.

로스쿨 학생회장 활동을 한다고 친구들에게 말했을 때, ‘로스쿨 갔으면 공부해야지 왜 거기까지 가서 사서 고생하냐’라는 말도 많이 들었어요(웃음). 누군가의 눈에는 쓸 데 없고 사서 하는 고생으로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공부하느라 바쁘다는 이유로 아무도 그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그건 궁극적으로는 모든 학생들의 권익이 대변되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하게 됩니다. 즉,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인 거죠. 저는 제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에 애정을 굉장히 많이 느끼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를 위해 일하고 싶은 마음도 항상 갖고 있었어요. 다행히 고려대학교 로스쿨은 이런 일을 함께 해나가자는 분위기가 잘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학생회장 활동을 결심할 수 있었습니다.

법학협 비대위원장은 다른 회장님들의 추천 덕분에 맡게 되었습니다. 학교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바쁘실 텐데 그 와중에도 법학협 활동에 진지하게 참여해주시는 회장님들을 보며, 제게 비상대책위원장직을 맡겨 주신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지난 1년간 터득한 본인만의 공부 방법을 공유해 주세요.

매일 그 날 수업시간 내용을 복습하고 잘 정리된 자료로 만들어서 쌓아가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년 동안 공부하면서 느낀 건, 확실히 매일 복습하며 자료를 만들어 놓았던 과목과 시험기간 압박해서 급하게 내용을 정리한 과목의 이해도가 정말 많이 차이가 난다는 것이었어요. '복습'과 '정리'라는 게 너무 편한 이야기 같지만 로스쿨에서는 각 과목마다 학습해야 하는 양이 정말 많기 때문에 이 기본적인 것을 해내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매일 배운 내용을 정리해서 하나의 완성된 자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법조인을 소개해 주세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 '법조인'이라고 하면 다소 부정적인 이미지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비리 덩어리 판검사', '돈만 밝히는 변호사', 뭐 이런 이미지요. 저도 로스쿨에 입학해서 선배님들을 만나보기 전까진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만나본 대다수의 법조인 선배님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곳곳이 역할을 하고 계셨어요. 매일 새벽까지 야근하시며 자신의 건강, 생활, 가족관계 등 모든 것들을 상당부분 포기하면서 일하시는 이유는 법조인으로서의 사명감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 덕분에 우리 사회가 조금이나마 공정한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아직도 개선되어야 할 모습들이 많긴 하지만요. 진부할 수도 있지만 특정 인물보다는 이런 모든 법조인 선배님들께 진심으로 존경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사회에서 필요한 법조인은 어떤 법조인이라고 생각 하나요?

용기있고 공정한 법조인, 바르고 따뜻한 법조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법이 옳고 그름을 가르치는 칼이라고 생각해요. 법조인은 그 칼을 다루는 사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부패한 부분에 대해 단호하게 행동할 수 있는 용기와 바른 생각을 가진 법조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사회에서 법조인으로 역할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사회구성

원들의 행복인 만큼 인간에 대한 따뜻함을 잃지 않아야 하는 것도 법조인으로서 가져야 할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위덕목들은 검사 선서에 나와있는 건데, 비단 검사뿐만 아니라 모든 법조인이 갖추어야 할 덕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항상 마음에 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 어리고 아는 것도 많지 않지만 앞으로 많은 경험들을 하면서도 이러한 마음가짐을 지켜나가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로스쿨 졸업 후의 진로에 대해 이야기 해주세요!

지금 당장 졸업 후의 진로를 결정하기에는 아직 아는 것이 많이 부족해서 다양한 직역에서 인턴경험을 해보고 결정하려고 합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는 있지만 한 가지를 꼽자면, 저는 검사가 되고 싶어서 로스쿨에 왔어요. 저는 제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눈감고 넘어가지 않고 반드시 고치려고 노력하는 성격이라고 생각해요. 가끔은 이런 타협하지 않는 성격이 불편함을 만들 때도 있지만 타협하지 않는 자세로 우리사회의 잘못된 부분들을 고칠 수 있다면 좋은 검사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더 많은 경험을 하며 바뀔 수도 있겠지만 지금의 저는 검사로서 좀 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요(웃음), 더 열심히 공부해야죠.

Lawschool TIP

김서래 학생이 알려주는 로스쿨 입학 꿀팁

나만의 색깔 찾기!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기소개서를 쓸 때 법률봉사 경험, 법학회 활동 등 '법'만을 외치며 자신을 어필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대부분 학교에서 법학과가 없어졌는데, 4년 혹은 그 이상 공부한 자신의 전공이 주가 아니라 법학이 주가 되어버린다면 그러한 자기소개가 과연 진정성이 있을까요? 그보다는 자신이 학부 내내 전공했던 과목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는 게 오히려 더 자연스럽게 진정성 있는 자신만의 스토리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모두가 같은 모습을 보여 주려고 노력하는 와중에 자신만의 색깔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눈에 띄지 않을까요!



로스쿨 창에 소중한 원고를 보내주세요!

〈로스쿨 창〉은 여러분의 소중한 원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로스쿨과 관련된 내용의 원고를 자유로운 형식으로 보내주세요. 독자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하오니, 로스쿨 재학생, 교수님, 외부 필진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로스쿨창에서 다뤄졌으면 하는 내용이나 주제에 대한 의견도 기탄없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 상시접수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showe@leet.or.kr)
- 유의사항 및 문의처
 - 제출된 원고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 내용이 허위 또는 표절임이 판명될 경우 게재 취소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박소희 대리 02)752-2037

또 다시 “정의란 무엇인가”를 묻는다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박성우 교수

1980년대 초반 관공서나 경찰서의 정문에 걸려 있던 표어가 있었다. “정의 사회구현.” 정부가 앞장 서 정의를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니 얼마나 다행스런 일인가. 그러나 당시의 정부가 정의의 편에 서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던 것 같다. 오히려 ‘진정한’ 정의는 그 반대편에서 힘겹게 버티고 있었던 것으로 역사는 증언한다. 40여 년의 시간이 흘렀다. 우리 사회는 세월의 양만큼 정의로워졌을까?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권위주의 사회에서 벗어나 민주화를 이뤘다는 성취감, 이를 부러워하는 세계의 시선은 국민적 자부심을 갖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과연 정의로운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국민의 상당수는 민주주의의 성취와는 별도로 우리 사회가 여전히 불공정하고, 정의롭지 않다고 인식한다. 왜 그럴까? 사회적 정의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높아졌고, 불공정성에 대해 민감해진 것도 하나의 요인이 될 것이다. 굳이 따지자면, 이러한 요인은 전적으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정의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은 사회적 연대성을 해칠 우려가 있긴 하지만, 보다 정의로운 사회를 향한 원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우리 사회가 정의를 갈구하는 모습 속에는 적잖게 걱정스런 부분이 나타난다. 정파적 이익의 추구하고 정의의 추구를 혼동하기도 하고, 정의의 이름으로 상대를 굴복시키고 악마화하려는 이른바 정의의 양극화 현상도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정의인가보다 “누구의” 정의인가가 더욱 중요한 문제로 부상한다. “내로남불”이란 유행어가 생길만큼, 우리 사회는, 내 편의 주장은 그 목적과 수단이 어떠하든 모두 정의롭고 상대방의 주장은 모두 부정할 것으로 간주하는 것에 익숙해져 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상대를 힘으로—그것이 정치권력이든, 여론의 힘이든—누를 수 있을 때, 비로소 자신의 정의가

인정받을 수 있다고 믿는다. “힘이 정의를 만들어낸다”(might makes right)라는 주장이 점점 힘을 얻어가는 추세라고나 할까?

이런 세태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정의의 존재 자체가 서서히 부정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의의 존재가 부정되는 것은, 정의의 기준이 무엇이어서 하는가에 대하여 서로 다투고 있는 상태보다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 물론 정의는 입장에 따라서 다르게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곧바로 절대적 정의의 존재 자체가 부정될 근거가 되거나, 모든 정의에의 호소는 권력을 얻기 위한 허위나 위선에 불과하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정의가 상대적인 것으로 보이더라도 여전히 정의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지 않으면서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을 던지는 것은 가능하다.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복잡한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순진한 몽상이라고 할지도 모른다.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정의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부정할 수 있을까? 만약 정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순진한 몽상에서 빠져나온 “성숙한 현실감”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현실감을 갖춘 이들은 이제 세상사에서 율음과 그릇을 판단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선언해야 할 것이다. 어떠한 도덕적, 윤리적 판단도 사실은 허위나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여길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성숙’은 어쩌면 정의를 포함한 도덕을 전면적으로 부정할 수 있는 ‘용기’를 갖출 때 얻어지는 것일지 모른다. ‘아쉽게도’—사실, 다행스럽게도—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정의와 도덕을 전면적으로 부정할 만

큼 뻔뻔스런 “용기”를 갖고 있지 못하다. 그러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절대적 의미 정의는 어딘가 존재해야 하는 것인데, 어딘가에...

약 2500년 전, 피라에우스라는 항구 도시에 위치한 케팔로스의 집에서 소크라테스와 몇몇 인사들은 정의에 관하여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다. 토론에 참여한 인물 중에서는 플라톤의 형제로 알려져 있는 글라우콘 그리고 소피스트로 이름을 날린 트라쉬마코스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의 토론은 플라톤이 저술한 <폴리테이아>(국가)라는 이름의 고전으로 우리에게 남아 있다. 놀랍게도 이 고전은 오늘날 정의와 관련해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의 정곡을 찌르고 있다. 무엇보다 소크라테스의 대화 상대자들은 오늘날 우리가 정의에 대해 품고 있는 여러 시각들을 매우 적절하게 대변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소크라테스의 대답은 차치하고라도, 이들의 주장을 통해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은 어떨까?

당시 아테네는 스파르타와 전쟁 중이었다. 아니 그리스 세계 전체가 두 패권국을 중심으로 헤게모니 전쟁에 참여하고 있었다. 전쟁은 사람들로 하여금 법이나 정의보다 군사력이나 경제력과 같은 힘의 위력을 실감할 수 있게 한다. 이런 상황에서 아테네의 젊은이들은 설득의 힘, 즉 수사학을 권력의 원천으로 간주하는 소피스트에게 관심을 갖기 마련이다. 소피스트의 한 사람인 트라쉬마코스는 젊은이들의 기대에 부응하듯, 정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권력만을 최우선시하는 입장을 체계적으로 제시한다. 그에 따르면, 정의란 강자의 이익에 봉사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누구나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자연스런 일이나, 강자만이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이익을 따르게끔 복종시킬 수 있고, 강자만이 자신에 대한 복종을 정의라고 규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다. 트라쉬마코스의 강자는 단순히 힘이 센 자가 아니다. 국가 전체를 지배할 수 있는 통치자다. 아울러 권력행사의 수단으로 법을 수단으로 동원할 수 있는 지배자다. 권력자를 제외한 약자들은 법에 복종하는 것이 결국에는 강자의 이익에 봉사하는 것이라는 것을 모른 채, 혹은 알아도 어쩔 수 없이, 법에의 복종을 정의라고 믿으며 살아가는 이들이다. 정의가 상대화되고, 양극화되는 현실에 처한 젊은이들에게 트라쉬마코스의 정의관은 매력적으로 들릴 것이다. 그러나 트라쉬마코스의 정의관에 전적으로 동의하려면, 정의의 본질뿐 아니라, 국가의 본질과 법의 본질에 대해서도 동의해야 한다. 그러기에는 다소 망설여지는 부분이 있다. 권력자가 어떤 위법성으로부터도 면죄부를 받을지 모른다는 의심이 드는 것을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모든 법이 강자의 이득만을 위해 존재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글라우콘은 트라쉬마코스의 정의관 중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을 감안하여,

법과 정의의 관계를 재정의한다. 그에 따르면, 다수의 약자들은 강자가 부정의를 행할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를 구성하고, 부정의를 처벌하는 법을 제정했다고 한다. 트라쉬마코스와 달리 글라우콘의 법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정의와 법은 강자가 되지 못한 이들의 차선책이다. 따라서 누구든 강자가 될 수 있거나, 처벌을 면할 수만 있다면, 법과 정의를 회피하려 들 것이다. 글라우콘의 사회계약론은 누구나 할 수만 있다면 권력과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해서 부정의를 행할 것이라고 가정한다. 글라우콘의 정의관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처벌이나 평판이 두려워 마지못해 행하는 것이라고 가정하는 면에서 트라쉬마코스의 정의관과 상통한다. 그와 다른 점이 있다면, 글라우콘은 소크라테스와 함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이에 답하는 긴 여정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트라쉬마코스의 정의관을 대중적 버전으로 승화시켰지만, 트라쉬마코스처럼 정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다. 대신 여전히 세간에서 어정쩡한 지위에 놓여 있는 정의의 위상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소크라테스의 도움을 청하고 있다. 글라우콘은 정의가 좋은 평판을 얻고 처벌을 면하는 것과 같은 부수적인 좋음 때문이 아니라, 정의 그것 자체로서 좋음 때문에 추구될 가치가 있다는 것을 증명받고 싶어한다. 그래야 어떠한 세간의 유희도 뿌리치고 부정의보다 정의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폴리테이아> 속에서 글라우콘은 처음부터 소크라테스와 동행했던 인물이다. 소피스트를 선망하는 젊은이들과 달리, 철학적 탐구를 선호하는 기질을 가진 젊은이었다는 얘기다.

글라우콘의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소크라테스는 정의가 무엇인가를 정의내리는 데 온갖 힘을 쏟는다. 전체 10권으로 구성된 <폴리테이아>에서 글라우콘이 문제를 제기한 지점이 2권 초반부이니까 소크라테스와 글라우콘은 이후 약 10배 분량의 토론을 벌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소크라테스는 개인의 정의를 규정하기 위해서, 먼저 국가의 정의를 찾아내 개인에 적용해 보자고 제안한다. 이후 소크라테스는 “말로써” 가장 이상적인 국가를 만들기도 하고, 이상국가의 실현가능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철인왕을 제안하기도 하면서 논의를 이어간다. 또한 그 유명한 이데아론을 제시하기도 한다. 플라톤에 대해서 “유토피아니스트” “반민주주의자” 혹은 “열린 사회의 적”과 같은 칭호가 부여된 것은 이러한 내용들에 기인한 바 크다. 플라톤에 이러한 평가가 정당할 것인지, 그 근거를 <폴리테이아>에서 찾는 것이 옳은 해석인지를 여기서 논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다만, 플라톤에 대한 교조적 해석으로 인해 이 고전의 유용성까지 부정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앞에서 부분적으로 소개했지만, 적어도 1권부터 글라우콘이 문제제기를 하는 2권 초반까지만 읽어 보면, 이들의 사고가 정의에 대한 우리의 고민과 얼마나 일치하는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고전의 유용성과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들이 정의를 둘러싼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을 제기하고 이에 답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물음에 대한 답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가는 차치하고라도, 정의를 둘러싼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은, 같은 처지에 놓인 우리들에게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법과 정의를 다뤄야 하는 전도유망한 젊은이들에게는 더없이 중요한 선택지가 아닐까?

10여 년 전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저술한 마이클 샌더이라는 미국의 정치철학자가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 이방인 정치철학자에 대한 한국 대중의 호응은 그 자신도 깜짝 놀랄 만큼 뜨거웠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 책이 그토록 큰 인기를 얻었던 것은 우리 사회가 그만큼 정의 문제에 대해 골몰하고 있었음을 반증한다. 그 후로 적잖은 시간이 흘렀고 여전히 마이클 샌더의 여운은 우리 사회에 남아 있건만, 우리의 정의의 수준이 개선됐다고 자부하기는 어려운 상태다. 무엇보다 걱정스러운 것은, 앞으로 우리 사회를 이끌고 갈 젊은 세대들이 최근 목격되고 있는 정의의 상대화와 양극화 현상으로 인해, 정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도덕적 허무주의에 빠지거나, 권력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는 천박한 현실주의에 빠지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폴리테이아> 속 소크라테스도 아테네의 지도자가 될 만한 젊은이 글라우콘에 대해서 필자와 유사한 걱정을 하고 있었던 것 같다.

애매한 나를 견디는 일



정문정 작가

‘어떤 등장인물도, 매우 그럴듯하지만, 심금을 울리진 않는다. 보는 사람을 곁들게 하면서 그냥 얼마간 웃다가 가라고 권하는 것 같기도 하다. <중략> 관객에게 당신들이 웃고 있는 동안 세상이 더 나빠진 걸 아느냐고 넌지시 물어보는 걸까. 이도저도 아니라면 그저 불협화음을 즐기는 악취미인가. 이 감독은 웃기지만 아리송한 질문을 남기는 이상한 코미디 한 편으로 데뷔했다.’

모 평론가가 2000년 발표된 한 영화에 대해 쓴 평론이다. 미지근한 평을 받아든 이 감독은 삼십대에 장편 상업영화로 데뷔했는데, 작품은 관객 수 10만 명을 간신히 넘기며 흥행에 대실패했다. 이 감독은 바로 봉준호이고 ‘이상한 영화’라는 평을 들은 데뷔작은 배두나 주연 <플란다스의 개>다. 당시 봉 감독은 동료 감독에게 “난 재능이 없나봐” 하며 괴로워했다고 한다. 낙심하던 봉 감독이 어렵게 두 번째 기회를 얻어 절치부심해 만든 작품이 바로 <살인의 추억>이다. 그는 이후 <괴물>로 1300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면서 한국의 대표 감독으로 올라섰다. 이다음부터는 모두가 다 아는 이야기다. 2019년 봉 감독은 <기생충>으로 칸 영화제에서 한국 영화 최초로 황금종려상을 수상하며 화제가 됐고 작품은 세계적으로 흥행해 그에게 1억 달러가 넘는 수익을 가져다주었다.

봉준호 감독은 <기생충>의 흥행 후 그를 기리는 다큐멘터리에서 <플란다스의 개>와 관련해 이런 말을 한 적 있다. “영화가 스토리 자체가 성립이 안됐다. 왜 이런 영화를 찍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시사회 때 영화가 끝나기 전에 자막 올라가기 시작할 때 뛰쳐나왔다. 얼굴이 새빨개졌다. 너무 외롭고 창피했다.”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플란다스의 개’는 절대 보지 말란 농담도 했다. “요즘 해외에서 미니 회고전 형식으로 제 작품들을 상영해주는 경우

가 있는데, <플란다스의 개>만큼은 상영작에서 빼주면 안 되겠냐고 애원하곤 하죠.”

나는 이런 흑역사 에피소드를 좋아한다. 성공한 사람의 실패담은 언제 봐도 재미있다. 처음부터 천재였을 걸로 보이는, 넘볼 수도 없는 사람들이 사실 자기도 실패한다고 고백할 때, 과거를 부끄러워할 때 어쩐지 안도감이 든다. 이런 순간은 또 있다. 천재가 아님을 인정하면서도 자기 일을 책임감 있게 해나가는 수재를 볼 때다. 불안과 부정적인 예감에 사로잡혀 투덜거리면서도 꾸역꾸역 당장 할 일은 하는 사람은 멋지다. 진짜로 대단한 이들 속에서 나는 별 것 아니었던 걸 깨달은 뒤에도 일단 지금 해야 하는 것부터 챙기는 모습을 보면

응원하게 된다. 봉 감독이 자기에게 재능이 없는 것 같다고 고민하면서도 꾸역꾸역 시나리오를 계속 썼듯이.

이상과 현실의 괴리로 고민하다가, 내 길은 아니구나 포기하는 이를 많이 보았다. 애매한 실력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을 말하라면 당장 떠오르는 이름 수십 개도 댈 수 있다. 그러자면 일단 나부터 호명할거다. 학창시절부터 책 읽는 걸 좋아했고 글쓰기로 자주 칭찬 받았다. 전업 작가를 꿈꿨지만 그럴만한 재능은 없는 걸 일찍이 알았다. 10곳의 백일장에 나가면 9개쯤의 상을 탔다. 그러나 최우수상을 탄 기억은 거의 없다. 항상 우수상이나 장려상 그 언저리. 상장들은 내게 말하는 것 같았다. “꽤 하는구나. 대단한 수준까진 아니지만.” 물론 알고 있다. 상을 타는 자체가 대단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다고. 그러나 최우수상을 받은 사람 뒤에 서있는 경험을 자주 하게 되면, 차라리 상을 못 받으면 깔끔하게 이 길을 포기할 텐데 애매해서 이리저리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는 마음이 들기가 더 쉽다.

고교 때 함께 상을 받던 이들은 대부분 문예창작학과나 국어국문학과에



입학했으나 나는 승산 없는 데다 미래를 걸 수 없었다. 돈 벌며 글 연습도 할 수 있는 곳을 생각하니 기자라는 직군이 떠올라 사회학과에 갔다. 콘텐츠 업계에서 10년 간 직장생활을 해 돈을 벌었고 퇴근 후에는 꾸준히 글을 썼다. 작가의 삶은 막연했지만 계속 쓰는 건 당장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었다. 취미였던 글쓰기를 꾸준히 하다보니 직장생활로 쌓은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책을 내는 순간도 왔다. 어릴 때 원했던 소설가는 못되었지만 에세이집은 냈다. 애매한 성공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확실한 건 실패는 아니다.

공무원 학원의 한 강사가 합격생과 수험생의 차이에 대해 이렇게 말하는 걸 인상 깊게 봤다. “공부하다가 힘들고 우울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란 질문을 하는 이들 중 합격생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거다. 합격생은 ‘울면서 공부하고’ 수험생은 ‘그냥 운다’는 것. 그냥 운다라... 나에게도 울기만 하던 밤이 있었지. 다른 관점에서 나카지마 이쓰시의 <역사 속에서 걸어온 사람들>에는 재능을 의심해본 이가 공감할만한 표현이 있다. 시를 잘 썼던 이징이 호랑이로 변해버려 산 속에 숨어살다 옛 친구를 만나 한탄하는 장면에서다.

“나는 시로 명성을 얻으려 하면서도 스스로 스승을 찾아가려고도, 친구들과 어울려 절차탁마에 힘쓰려고도 하지 않았다네. 그렇다고 속인들과 어울려 잘 지냈는가 하면 그렇지 못했네. 이 또한 나의 겁 많은 자존심과 존대한 수치심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걸세. 내가 구슬이 아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애써 노력해 닦으려고도 하지

않았고, 또 내가 구슬임을 어느 정도 믿었기 때문에 평범한 인간들과 어울리지도 못했던 것이라네.”

뒹아봤자 결국 구슬이 아닌 걸 들킬까봐 노력하지 않았고, 한편으로는 어느 정도 구슬일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포기하기도 어려웠다는 고백이 마음을 찢었다. 겁먹은 자존심과 존대한 수치심 때문에 이리저리 저러지도 못하고 인생을 허비했다는 탄식에 공감하는 사람이 나쁜 아닐거다. 아는 사람만 없으면 항상 도망가고 싶던 나의 이십대가 생각이 났다.

봉준호 감독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그의 누나 봉지희 씨 인터뷰에 따르면 어린 시절 봉준호는 ‘조용하고, 말수가 없었고, 느렸고, 공부는 굉장히 잘하고, 리더십도 있었지만, 특별히 끼가 있다거나 튀지는 않았다’고 한다. 누나가 보았듯 모든 천재들이 어릴 때부터 대단하게 두각을 드러내지는 않는다. 우리는 트로피를 든 미소만 보지만 그는 무대 뒤에서 많이 울었을 것이다. 그의 진짜 재능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면서도 흔들려가며 자신의 일을 하는데 있다. 학원 강사의 말처럼, 그는 울면서 하는 이다. 웃으며 하는 이가 아니라.

어쩌면 재능이란 영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좋아하는 일로 돈을 못 벌 것 같으면 해야 하는 일로 돈을 벌어서라도 좋아하는 일을 놓지 않는 꾸준함에 깃드는지도 모른다. 뒷골목에서 해매고만 있는 것 같아 비참해지는 순간이 자주 오겠지만 울며불며 하다보면 생각 못한 순간에 언저리에라도 도착할지 모른다. 그러다 또 어느 순간, 그 대단한 재능의 비결이 뭐냐고 물어오는 후배가 생겨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 애매한 나를 견디는 법은, 영영 통곡하며 일단 목적지 근처라도 가서 맴도는 데 있다.

정문정

anne.jeong@daum.net

책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을 썼다. 20대 전문 미디어 대학내일에 서 콘텐츠팀 부팀장으로 일했다. 자주 감탄하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한다.

“표준판례 선정은 로스쿨 교육의 기준 제시 위한 것”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화 하려면 로스쿨 교육부터 표준화해야 합니다.”

김순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은 최근 본보와의 통화에서 “변호사시험에서 구석진 판례까지 출제돼 로스쿨 교수들이 교육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표준판례 선정 작업을 시작한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표준판례 선정 작업은 로스쿨 교육의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금까지 만난 대한변호사협회, 법원행정처, 법무부, 교육부 관계자들 모두 표준판례 선정이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높이 평가했다”고 전했다. 이어 “표준판례를 그대로 변호사시험에 출제하라는 것이 아니라 판례가 다루고 있는 법리를 중심으로 테스트 하자는 것”이라며 “최종적으로 로스쿨 제도는 학교에서 표준판례를 기초로 공부시키고, 학생들이 일정한 점수 이상을 획득하면 변호사 자격을 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선정된 판례 매년 업데이트 수정·보완 작업 계속

김 이사장은 앞으로 헌법, 행정법, 상법 등 다른 과목에 대한 표준판례 선정 작업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헌법, 행정법, 상법 등 변호사시험 필수 과목에 대해서는 예산이 허용하는 한 계속 표준판례를 선정해 나갈 예정”이라며 “표준판례 선정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년 판례를 업데이트하고 수정·보완해야 하는 만큼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이어 “협의회는 지난 9일 ‘변호사시험의 완전자격시험화 방안’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며 “우리 사회에 필요한 적정 변호사 수가 얼마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헌법·행정법 등 다른 과목도 표준판례 선정 추진

김 이사장은 협의회에서 기업이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을 채용할 때 처우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할 수 있다면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 변호사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법과대학 시절 학부생이 4000여명가량 있었는데 대다수의 졸업생은 법조인이 되지 않더라도 기업에 취직해 법무업무를 담당해왔다”며 “지금은 25개 로스쿨에서 2000명이 배출돼 법학 전공자의 공급이 절반 가까이 줄었지만, 기업이 채용하는 변호사 수요는 크게 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 법무실 관계자를 만나 보면 로스쿨 출신 변호사 채용 때 처우를 어느 정도 해줘야 하는지 마땅한 기준이 없어 고민이 많다고 한다”며 “로스쿨 출신 변호사 채용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만든다면 변호사와 기업 간 처우에 대한 인식 폭을 줄여 변호사 채용 시장도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사출처_법률신문(2020.04.23.)

변호사시험의 완전 자격시험화 방안에 관한 연구



변호사시험을 완전한 자격시험으로 운영하기 위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저명한 교수 3인에게 의뢰해서 연구보고서를 제작했다. 연구에는 오수근 교수(이화여자대학교 법전문원), 김두열 교수(명지대학교 경제학과), 이승준 교수(충북대학교 법전문원)가 참여하였으며, 필자들은 연구를 통해 왜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으로 운영해야 하는지, 변호사시험에서 합격자를 결정할 때 변호사 수를 고려해야 한다는 논거가 왜 잘못되었는지,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규명하였다. 연구보고서는 총 7장으로 구성되었으며, 3명의 필진 외에도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의 견해를 함께 알아볼 수 있다.

저 자	오수근, 김두열, 이승준
출 판 사	삼영문화사
판매가격	23,000원
판 매 처	온라인 교보문고

「법학적성시험 문제 해설」

이 책은 LEET 기출문제 공식 해설서로서, LEET에 대한 일반의 이해를 넓히고 수험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출제 기관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연구사업단에서 기획하여 매년 펴내는 도서이다. 이번에 출간한 제10판은 LEET 언어이해 영역과 추리논증 영역 문제 및 이에 대한 해설이 수록되어 있으며, 영역별 최신 5회분(2020~2016학년도)과 과거 6회분(2015~2010학년도) 두 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저 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출 판 사	에피스테메
발 행 일	2019.11.25
가 격	8,000원('20학년도), 22,000원(합본)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이진한 기자

소속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차장
 학력 차의과학대학교 대학원 통합의학과 박사
 수상 2016년 제9회 건강의학기자상
 2015년 제1회 대한폐암학회 언론상
 경력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차장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겸임교수

앞에 놓인 수많은 법전들, 보고 또 보고 외우고 또 외운다. 하지만 오늘은 머리 속에 잘 들어가지 않는다. 머리가 아프고 복잡하다. 스트레스가 쌓이기만 한다. 스트레스는 우리 몸 면역기능을 떨어뜨리고 혈압, 위산분비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사소한 감기부터 두통, 소화기 질환, 비만, 당뇨병, 성기능 장애, 심혈관 질환, 그리고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인 암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질병의 원인이자다.

특히 내과에 입원한 환자의 약 70%, 암 환자의 약 50%가 스트레스와 연관돼 있다. 문제는 스트레스는 결국 환경이 바뀌지 않는 한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스트레스를 풀 때 어떻게 하는가? 스트레스 푸는 방법들은 각자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을 것이다. 친구를 만나다거나 조깅 등 운동을 한다거나 또 평소에 안 해 본 취미활동을 한다거나 등이다. 여전히 풀리지 않는다면 의학적인 근거로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을 한번 접근해보면 어떨까? 훨씬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우선 머리가 복잡할 때는 몸을 움직여 보는 것이 의학적으로도 도움이 된다. 따로 시간을 내서 어떤 장소에 가서 운동을 하지 못하더라도 일상에서 몸을 움직이면 정서 조절에 도움이 된다. 실제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감정이 우울할수록 몸을 움직이면 기분이 한결 나아진다. 이는 바로 마음의 평안함을 주는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분비되기 때문이다.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있다. 지금까지 산모의 분만을 촉진하고 모성애가 발휘될 때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엔 이성 간의 사랑은 물론 동료나 이웃 심지어 애완동물까지 상대에 대한 애정이 충만할 때 분비된다. 이 때문에 사랑 호르몬으로도 불린다.

운동을 통해 근육량을 늘리는 것도 도움을 준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연히 우리 몸의 온도는 떨어지게 된다. 이때 우리 몸에서 열을 가장 많이 만드는 곳이 골격근이다. 우리 몸의 22%의 열은 근육에서 만들어진다. 따라서 근육이 많아지면 같은 운동을 하더라도 근육이 적은 사람보다 더 많은 지방을 연소하면서 열을 더 많이 생산한다. 또 운동을 통해 몸에 쌓인 스트레스가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경우도 많다.

그래도 스트레스로 인해 잠도 오지 않고 불편한가? 일단 잠자리에 들 때는 학교, 직장 등에서 가져온 각종 생각을 아예 끊어버려야 한다. 자리에 누우면 온몸의 근육이 흐물흐물해질 정도로 긴장이 풀어진 이미지를 머리에 떠올리며 신체를 이완시키는 게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 또 잠자리에 들기 1~2시간 전에 적당히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는 것도 스트레스로 인해 경직된 근육을 이완시키는데 좋다.

해결되지 않는 고민의 경우 '고민장부'를 만들어 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노트의 한쪽에 고민거리를 적고 다른 한쪽에는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적어보는 것이다. 해결책이 없는 고민을 하는 나 자신도 발견하게 된다. 고민장부를 적어가다 보면 문제에 대해 효과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같은 문제를 반복적으로 고민하는 일을 피할 수 있어 정서적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

또 평소보다 하루에 물 두 잔 더 마신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신진

대사가 떨어지는데, 이는 우리 몸을 지속적인 스트레스 상태로 유지시킨다.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오르고, 신진대사율이 떨어진다. 따라서 신진대사 저하를 막고 스트레스에 잘 저항하려면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 좋은데, 매일 물을 두 잔씩 더 마시면 신진대사를 30% 증가시킬 수 있다. 대신 이노자용을 촉진하는 알코올과 카페인 음료는 마실 때는 좋지만 결국 몸의 스트레스를 더 악화시킨다.

피로를 줄이려면 개인의 마음가짐도 중요하다. 하지만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성격을 바꾸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이동환 만성피로클리닉 원장은 마음가짐을 바꾸는 방법으로 '스트레스 낮설게 보기'와 '심리적 동화 기법'을 추천했다. 이 원장은 마음가짐의 정의를 자신에게 익숙한 생각의 방식, 습관이라고 설명했다.

'스트레스 낮설게 보기'는 늘 비판적으로 바라보던 스트레스를 다른 시선으로 보는 방법이다. 즉 한번 실수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최악의 하루를 보냈더라도 '오히려 성숙해지는 계기가 됐다'고 한 번만 (일기장에) 적어보면 된다. 그렇게 달리 보는 하루가 쌓여 새로운 생각의 습관이 생길 수 있다.

'심리적 동화기법'은 좋은 음식을 먹으면 건강한 육체를 가지듯, 건강한 심리적 자극을 받고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것이다. 독서와 음악 감상 등 문화생활을 하거나 각자의 힐링 시간을 가지며 감동을 받는 것을 말한다. 평소 생활을 하며 그간 억누르고 있던 분노를 표출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다.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고 꾸준히 영양제를 챙겨 먹는 등 식습관을 개선하는 노력도 중요하다. 이 원장은 "건강한 정신은 건강한 육체에서 나오는 법"이라며 "현대인 대부분은 에너지를 만들어 주는 마그네슘 결핍에 걸려 있는데 틈틈이 이를 보충해줄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도 피로도를 줄이는 중요한 팁"이라고 말했다.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술자리부터 찾는 것을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다. 이 원장은 "술 마실 때 잠깐 잊고 있던 스트레스는 다음 날이면 되살아난다. 그 순간만 잠시 잊고

있는 것"이라며 "술을 마시면 안 그래도 부족한 마그네슘이 빠져나가 근육이 경직되고 오히려 체력이 더 떨어져 피로의 굴레에 빠진다"고 말했다.

동일한 강도의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어떤 사람은 잘 이겨내는 데 비해 어떤 사람은 버거워한다. 이는 스트레스에 대한 내성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마치 소주 한 병을 마셔도 괜찮은 사람이 있는 반면 1, 2잔만 마셔도 힘든 사람이 있는 것과 비슷한 이치다. 긴장을 끈을 풀 수 있는 복식호흡도 스트레스로 멎쳐진 근육을 푸는데 도움이 된다. 병원에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환자들에게 복식호흡을 가르쳐 주기도 한다. 즉 숨을 들이마실 때는 배를 내밀면서 코로 천천히 들이마셨다가 숨을 참고 3~5초 정도 잠시 정지한다. 숨을 내실 때도 역시 천천히 배를 집어넣으면서 숨을 치아 사이로 조금씩 끊어서 내신다.

스트레스 체크 리스트

- 1 한 달에 2번 이상 극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 2 아무리 쉬어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
- 3 온종일 불안, 우울 혹은 분노를 느낀 적 있다?
- 4 최근 성욕 감퇴를 느낀 적 있다?
- 5 체중이 쉽게 불어난다?
- 6 갑자기 단 음식, 밀가루 음식이 먹고 싶은 적 있다?
- 7 기억력이나 집중력이 떨어질 때가 있다?
- 8 두통이나 어깨, 목의 근육 긴장이 자주 느껴진다?
- 9 소화불량, 설사, 변비 같은 소화기 증상이 자주 발생한다?
- 10 감기나 몸살, 입술 물집 같은 바이러스 질환에 자주 걸린다?

※ 1~3개 해당 :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있지 않은 상태. 건강한 식습관과 운동 유지.
 4~6개 이하 : 스트레스 경계 상태로, 몸 여기저기 기능이 떨어지면서 소화가 안 된다거나, 식욕이 떨어지거나 두통이 생길 수 있음.
 7개 이상 : 스트레스에 굉장히 오랫동안 시달리고 있는 상태. 반드시 병원 방문



임주영 변호사

- 제48회 사법시험 합격, 제38기 사법연수원 수료
- 전] 국선전담변호사
- 전] 한국전력공사 사내변호사
- 현] 법무법인 별 파트너 변호사

영화 속 법 이야기 : 협상

이 달의 영화



⊕ 협상
범죄 / 2018.09.19. / 114분 / 한국 / 15세 관람가

A변호사는 친구의 소개로 온 고객과 장장 1시간 동안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고객은 A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기로 마음 먹었다. 이제 수임료를 정하는 문제만 남았다. 그런데 A변호사와 고객 사이 적정 수임료에 대해 의견차이가 있는 것 같다. 고객은 500만원이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A변호사는 이 정도 규모의 사건이면 최소한 1000만원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자, 당신이 A변호사라면 어떻게 원하는 수임료를 받아낼 것인가?

변호사라면 자주 마주하게 되는 상황이다. 밀고 당기는 협상의 기술이 필요한 순간이다. 고객과 생각의 차이의 중간 지점인 750만원을 제시한다면, 당신의 협상의 하수이다. 협상의 고수는 어떻게 반응하고 대응할까?

필자가 법과대학에 다녔던 시절,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에서 연수를 받던 시절, 그리고 변호사가 된 후에도 협상에 관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 본 기억이 별로 없다. 협상이 필요한 순간에는 과거의 경험에 의존하여 임기응변식으로 임했다. 그러나 침대만 과학이 아니라, 협상도 과학이다. 일정한 법칙이 존재하고 그 법칙에 따라 임할 때 협상테이블에서 성공할 가능성은 더 많이 높아진다.

2018년, 배우 손예진과 현빈 주연으로 화제가 되었던 “협상”이라는 영화가 개봉했다. 최근에 방영된 TV드라마에서 애절한 연인으로 등장했던 두 배우가 위 영화에서는 협상 테이블에 마주앉아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서로의 의중을 파악하느라 힘겨루기를 하는 사이가 되었다.

사실 이 “협상”이라는 영화는 제목이 무색할 만큼 협상다운 협상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뛰어난 유학과 협상전문가로 등장하는 손예진 배우는 협상의 순간에 제대로 된 협상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협상의 상대에게 끌려 다니는 모습을 보여주고 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이 영화 속에서 현실의 협상 법칙이 어떻게 발현되었는지 찾아보고, ‘협상’이라는 이름 값을 하게 해주려 한다.

우선 영화의 줄거리를 간단히 소개하면 이렇다. 서울지방경찰청 위기협상팀 소속 하채운 경위(손예진)는 서울 한복판 양재동 주택에서 벌어진 외국인 노동자의 인질극에 투입된다. 하채운이 인질극이 벌어지고 있는 가정집 내부로 들어가서 외국인들과 협상을 시도하려는 순간, 경찰특공대가 사태를 무력으로 제압하기 위해 투입되고 결국 인질과 인질범 모두 사망하고 만다. 이 사건으로 충격을 받은 하채운은 사표를 내려하지만, 선배 경찰과 함께 경찰청장의 급한 호출을 받고 어디론가 달려간다. 그곳은 종합작전상황실, 경찰청장, 청와대 비서관 등 고위층 관리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한 사람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채운은 어떤 상황인지 모른 채 무조건 전화를 받으라는 주변 사람들의 독촉을 받고 모니터 앞에 앉는데, 모니터 저편에서 국제범죄조직의 무기밀매업자 민태구(현빈)가 등장한다. 민태구는 대한일보 이상목 기자와 하채운의 직속 상관인 정팀장을 인질로 잡고 있는 상황. 민태구가 왜 이들을 인질로 잡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채운은 민태구와 협상을 시

작하게 된다. 사실 민태구는 무기밀매업을 통해 정부 고위층 간부들의 검은 돈을 만들어주던 구관수 회장의 밑에서 일을 했고, 자신의 하나뿐인 동생 현주를 구회장의 자금세탁일을 하는데 관여하게 했다. 하지만 구회장 일당이 자신의 동생을 죽이고 자신마저 처내려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인질극을 통해 구관수 회장과 고위층의 검은 커넥션을 밝히고 동생의 죽음에 대해 복수하려 했던 것이다.

자, 이제 장면 하나하나 속으로 들어가보자.

장면 하나!

서울 양재동 주택가 인질극 상황. 외국인 인질범들은 자신들이 탈출할 수 있게 헬기를 띄울 것을 요구한다. 하채운은 집 바깥에 차가 있으니 그 차로 헬기까지 이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안심시킨다. 그러나 자신은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부를 설득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인질 중 한 명을 놓아줄 것을 요구한다. 여기서 등장하는 협상의 기술, 권한위임! 나한테 권한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영화 속에서 하채운이 인질범의 요구를 들어줄지 말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는 나오지 않는다. 어찌 되었든 하채운은 이런 협상 기법을 적절히 활용하였고, 만약 중간에 특공대가 침입하지 않았다면 인질 1명을 구출하는데 성공했을지도 모른다.

권한위임 기법은 실전 협상에서 꽤 효력을 발휘한다. 우선 시간을 벌 수 있고, 또한 상대방부터 더 많은 양보를 얻



어낼 수 있다. 상대에게 '내가 결정권한 있는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당신이 조금 더 양보해줘야 한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다. 하지만 너무 자주 쓰면, 상대의 신뢰를 잃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장면 둘!

민태구는 하채운과의 첫 대면에서 그녀의 신체사이즈를 묻는다. 인질을 두고 벌이는 상황임을 몰랐을 때 하채운은 민태구의 질문을 무시했다. 하지만 자신의 직속 상관인 인질 범으로 잡혀 있다는 사실을 안 이후에는 우선 경찰 제복을 벗고 셔츠만 입은 상태에서(아마 민태구에게 경찰과 협상한다는 인식을 심어주지 않고 편안한 상황에서 대화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설정인 듯하다) 민태구와 대화를 시도한다. 자신의 신체 사이즈를 알려주고 소개팅 1주일 전 식사를 굶었을 때 사이즈라는 농담도 건넨다.

하채운은 협상을 한 것일까? 서로가 요구하는 바를 전혀 꺼내 놓지 않았지만, 하채운과 민태구는 이미 협상을 시작하고 있었다. 협상이란 무엇일까? 과거 협상학에서는 협상이란 '서로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의사소통의 과정' 또는 '내가 원하는 것을 최대한 얻어내는 기술'이라고 정의했다. 그러나 최근 협상학에서는 '협상이란 상대의 행동, 인식, 감정을 변화시켜 가치를 키우는 의사소통의 과정'이라고 정의한다.

당신은 아주 중요한 고객과 첫 미팅을 하게 되었다. 고객은 펜을 하나 들고 있는데 살펴보니, 유명한 몽*** 펜이다. 그 걸 본 당신은 대화를 이렇게 이어갈 수 있다. "펜이 멋지네요,

최근에 몽***에서 스페셜 에디션이 나왔는데 혹시 보셨어요?" 내심 고가의 펜을 사용한다는 걸 알아주길 바랐던 고객은 당신의 반응에 기분이 좋아진다. "아 네, 제가 좋은 펜을 수집하는 게 유일한 취미랍니다. 좋은 펜을 쓰면 좋은 일이 생길 것만 같거든요." 당신은 미팅의 안건은 하나도 꺼내지 않았지만, 상대는 당신에 대해 일단 호감을 갖게 된 것이다. 상대가 당신에 대해 좋은 '감정'이 생겼기 때문에, 즉 당신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협상을 했다고 말할 수 있다.

하버드대학교의 스투어트 다이아몬드 교수는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감정을 중시했을 때, 논리에 집중했을 때보다 네 배 정도 더 많은 이익을 얻게 된다."

장면 셋!

민태구의 첫번째 요구사항, 이상목 기자가 속해 있는 대한일보 사장을 1시간 이내로 불러올 것. 그렇지 않으면 정팀장은 죽는다. 하채운은 민태구가 왜 그런 요구를 하는지 알지 못한 채, 정팀장의 죽음을 막기위해 대한일보 사장을 협상테이블에 앉게 한다. 사실 이상목 기자는 대한일보 소속 기자가 아니라, 국정원 소속의 블랙 요원이었고, 민태구의 무기밀매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국정원에 보고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다. 이미 민태구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대한일보 사장에게 이상목이 대한일보 소속 기자가 맞느냐고 묻는다. 만약 대답하지 않으면 사장 가족들의 신변도 안전하지 못할 것이라는 뉘앙스를 풍기면서 말이다. 대한일보 사장은 결국 소속 기자가 아니라고 실토하고, 민태구는



자신을 속였다면서 정팀장을 총으로 쏘 죽이고 만다.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의 수집과 협상팀 내부의 정보의 공유이다.

그 때까지 하채운은 민태구가 이상목이 대한일보 기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그래서 눈앞의 인질만을 생각해 허둥지둥 민태구의 요구 사항을 들어주었고, 민태구에게 끌려 다녔다. 또 한가지, 하채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하채운에게 그 사실을 미리 알려주지 않았고, 자신은 몰랐다고 변명하지만 이를 믿지 않은 민태구는 하채운이 거짓말을 했다고 믿고 인질을 죽인 것이다. 협상팀 내부에서 정보가 철저히 공유되어야 하고,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장면 넷!

영화가 중반을 넘어설 때까지도 하채운과 협상팀, 영화를 보는 관객 모두 민태구가 왜 이런 인질극을 벌이는지 알 수 없다. 민태구의 표면적 요구사항은 많았다. 하지만 왜 민태구가 그런 요구를 집요하게 하는지 알 수가 없다. 즉 민태구가 이번 협상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욕구"가 무엇인지 아무도 모른다. 영화에서는 극적 긴장감을 위한 시나리오 구성상 민태구의 "욕구"를 빨리 드러내지 않았다.

실제로는 이런 상황이 되면, 협상테이블에 임하는 협상가는 질문을 통해 상대방의 "욕구"를 파악해야 한다. 협상학에서는 말한다. 상대의 요구가 아니라 "욕구"를 파악해야 한다고.

영화에서는 민태구의 요구에만 집착하는 바람에 협상팀이 끌려가는 분위기이다. 요구를 들어주지만 정작 민태구의 욕구를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인질은 한 명씩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협상테이블에서 상대의 '요구'를 들어주기 어려운 경우, 다양한 질문을 통해 '요구' 이면에 있는 상대의 '욕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욕구를 알게 되면, 요구가 충족되지 못할지라도 모두가 원하는 성공적인 협상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

이 영화는 범죄를 저지른 인질범과의 협상 테이블에서 상대가 사람의 목숨을 쥐고 있는 철저하게 "갑"인 극적인 상황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협상의 모든 원칙이 그대로 적용

될 수는 없다. 그래서 하채운은 성공적인 협상을 이끌어내지 못했지만, 민태구가 넘겨준 자료로 고위 공직자의 비리를 세상을 알리는 정의 구현자가 되는 데는 성공한다.

영화를 끝까지 보고 나면, 민태구는 처음부터 협상할 생각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억울하게 죽은 친동생을 위해 복수하기 위하여, 자신이 갖다 바친 돈의 취식자들의 비리를 낱알이 공개하기 위하여 인질극을 벌였고, 협상을 가장한 전국 생중계를 벌인 사실을 알게 되면 좀 허탈한 생각이 든다.

자, 이제 처음의 사례로 돌아가보자.

협상의 고수 A변호사는 어떻게 수입료 협상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우선 고객이 얼마만큼 수입료를 지불할 능력이 되는지 친구를 통해 사전에 경제력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 제 아무리 수입료에 대해서 상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더라도 수입료를 지불할 능력이 없다면 A변호사의 입장에서 협상은 무의미하다. 어느 정도 경제력이 있다는 것을 사전 조사를 통해 알아냈다면, 이제는 왜 1000만원이 적정 수입료인지 설득하는 작업이 남았다.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다. 모든 협상의 기본은 신뢰이다. 신뢰는 어떻게 형성되는 것일까? 아주 간단하다. 친근하게 던진 몇 마디 일상적인 말이 전혀 몰랐던 사람을 오랫동안 만나고 안 사람처럼 느끼게 하고, 아, 이 사람 믿을 만하구나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 사건에 대해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그날의 날씨, 어떻게 사무실까지 왔는지, 입고 온 옷에 대한 칭찬 등등 분위기를 부드럽게 할 수 있는 요소는 다양하다. 그렇게 A변호사에 대한 호감을 심어주면 협상의 절반은 성공한 것이다. 어떻게 해서 1000만원이 적정 수입료인지,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면 좋다. 예를 들면, 사건의 난이도, 투입되는 변호사의 숫자와 시간, 작성하게 될 서면의 양과 횟수 등등을 사전에 미리 준비해서 제시하면 고객도 다른 소리를 꺼내기 미안할 것이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사건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철저히 서비스 정신으로 모든 진행 내역을 다 공유하고 알려주겠다는 말을 덧붙이면 고객은 최상의 서비스를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리고 말할 것이다. "네, 변호사님 그 가격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돌아온 세븐 핑거스
〈여행자〉



덴마크 리퍼블릭 씨어터와 공동 제작한 〈보스 드림즈〉로 2018년 LG아트센터 공연을 전석 매진시키며 아트 서커스의 새로운 지평을 연 세븐 핑거스가 최신작 〈여행자〉로 돌아온다. 태양의 서커스 출신 아티스트 7명이 의기투합하여 만든 컨템포러리 서커스 그룹인 세븐 핑거스는 2002년 창립 이래 2013년 미국 드라마 데스크 어워드 수상, 3번의 올림픽 공연으로 이미 전세계적으로 이름을 떨친 바 있다. 〈여행자〉는 세븐 핑거스의 뛰어난 서커스 기술이 기차역을 테마로 한 감성적인 드라마와 유기적으로 엮인 수작이다. 서커스 기술 중심의 에피소드식 구성을 뛰어넘어 음악, 안무, 연기, 기술의 절묘한 조합을 선보이는 이 작품은 한 편의 완벽한 드라마를 만들어낸다. 오는 6월, 서울을 비롯해 부산, 울산, 안동, 진주에서 공연될 예정이다.



- 🕒 **공연기간** 2020.06.12 ~ 2020.06.30
- 📍 **공연장소** 부산문화회관, LG아트센터 등
- 🎫 **티켓가격** R석_80,000원, S석_60,000원
- 🌐 **홈페이지** <http://ticket.interpark.com/>



초현실주의의 거장
〈르네 마그리트〉 특별전



이번 전시는 르네 마그리트의 독창적인 작품과 시적인 내면세계를 재조명하고자 예술과 기술, 미술과 음악이 융합된 관람객 참여형 전시로 구성되었다. 관람객들은 대규모 전시 공간을 가득 채우는 사운드와 영상을 통해 르네 마그리트를 만날 수 있다. 전시장에는 총 160여점의 작품들이 프로젝션 맵핑과 멀티미디어 체험 등을 통해 입체적으로 구현되며, 이번 전시는 국내에서 진행되는 르네 마그리트의 첫 단독전이다.

- 🕒 **전시기간** 2020.04.29 ~ 2020.06.30
- 📍 **전시장소** 인사센트럴뮤지엄
- 🎫 **티켓가격** 11,000원
- 🌐 **홈페이지** <http://ticket.interpark.com/>

전 세계가 사랑하는 명품 연극
〈ART〉



세 남자의 우정을 그린 블랙 코미디 연극 〈아트〉는 프랑스 극작가 야스미나 레자의 작품이다. 지금까지 15개 언어로 번역되어 35개 나라에서 공연되었다. 또한 토니 어워드 베스트 연극상, 몰리에르 어워드 베스트 작품상, 뉴욕 드라마 비평가협회 베스트 상 등을 휩쓸었으며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다. 대중성과 작품성을 인정받은 작품인 만큼, 우리 관객들에게도 늘 환영받는 작품으로, 엄기준, 박건형, 이건명 등 실력과 배우들이 총 출동했다. 코로나19로 인해 4월 초순부터 중순까지의 공연을 중단한 바 있어, 예매 시 문의가 필요하다.

- 🕒 **공연기간** 2020.03.07 ~ 2020.05.17
- 📍 **공연장소** 백암아트홀
- 🎫 **티켓가격** R석_66,000원, S석_44,000원
- 🌐 **홈페이지** <http://ticket.interpark.com/>



코로나 시대의 문화예술



디지털 콘서트 홀 오픈을 소개하는 독일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홈페이지 메인 화면



집에서도 전시를 만날 수 있다고 소개하는 국립현대미술관 공식 홈페이지 메인 화면

코로나19의 여파로 휴관을 하는 공연·전시장이 늘어나자, 온라인 전시와 공연이 활성화되고 있다. 비행기를 타고 가야만 볼 수 있었던 세계 유수의 작품들을 무료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이제는 편안하게 집에서 즐길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이다. 독일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모든 공연 일정을 취소하는 대신 디지털 콘서트 홀을 오픈했다. 전설적인 지휘자 헤르베르트 폰 카리안이 활동하던 1960년대 후반부터 최근 공연까지 600여 편의 공연 영상이 공식 홈페이지에서 모두 무료다. 세계에서 가장 큰 박물관으로 꼽히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에르미타주 미술관 내부 영상도 지난 3월 유튜브에 공개됐다. 우리나라의 국립현대미술관도 '미술관에 흠(서) 전시를 온라인 개관을 하였으며, 국악방송도 온라인 공연을 편성했다.

대한변협 법전문 3주기 평가기준 논의를 위한 T/F 회의 개최



지난 4월 10일(금) 법전문협의회 이사장실에서 대한변협 법전문 3주기 평가기준 논의를 위한 T/F회의가 개최되었다. 그동안 법전문협의회는 “법학전문대학원 3주기 평가기준” 중 “교육성과(시범평가)”가 과도한 평가자료 제출 등 현실적인 어려움을

아기해 평가항목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법전문 평가위원회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서 전달한 바 있다. 이에 대한변협 평가위원회에서는 개선안을 마련하였으나, 협의회가 요구한 사항의 반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와 법전문협의회는 T/F팀을 구성하여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김순석 법전문협의회 이사장을 비롯해 김대환 원장(서울시립대), 오종근 원장(이화여대), 박세화 원장(충남대), 김재봉 원장(한양대)이 참석했다.

법원행정처 간담회 개최

4월 17일(목) 대법원 6층 대회의실에서 법원행정처와 법전문협의회와의 간담회가 진행되었다. 이번 간담회는 법원실무, 2 출강 및 교육·연수원 프로그램 개선 등 법전문원의 현안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법원행정처 측에서는 홍동기 기획조정실장,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외 7인이 참석하였다. 법전문협의회 측에서는 김순석 이사장, 김대환 원장(서울시립대), 김일환 원장(성균관대), 박세화 원장(충남대), 김재봉 원장(한양대)이 참여하였다.

2020년도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공동채점 원장단 회의

지난 4월 20일(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회의실에서 법학전문대학원 2020년도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공동채점 원장단 회의가 개최되었다. 회의에는 김순석 이사장, 최희수 원장(강원대), 서종희 부원장(건국대), 정하명 원장(경북대), 손태우 원장(부산대), 이준민 부원장(전남대), 송양호 원장(전북대), 오성근 원장(제주대), 박세화 원장(충남대), 이동원 원장(충북대)이 참여해 2020년도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의 총괄위원장 및 영역별위원장, 채점위원을 선정하였다.



법학적성시험(LEET) LEGAL EDUCATION ELIGIBILITY TEST)이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거, 다양한 학부·전공을 가진 사람들이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을 이수하는데 필요한 수학적능력과 법조인으로서 지녀야 할 자질과 적성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으로, 법학적성시험 성적은 당해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의 필수요소의 하나로 활용됩니다.

2021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시행공고

높은 장학금 혜택

- 전체 재학생의 63.7%가 장학금 수혜
- 통폐급 총액 대비 장학금 지급률 34.7%
 - ※ 2019학년도 기준
- 경제학 학과제출(가초생활수급자·소득분위 3구간)에게 등록금 100% 이상의 장학금 지급
 - ※ 총 980명 등록금 전액 수혜(2020년 기준)

특별전형·지역균형인재 선발

특별전형제도

- 학교 입학자의 7% 이상 선발
- 특별전형률 통해 입학한 학생 총 1,632명(2009~2020년)
-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재학생에게 장학금 지급(학교별 상이)

지역균형인재 선발제도

- 지방소재 법전문은 해당 지역 대학교 출신을 일정비율 이상 선발(10~20%)

최상의 교육과정·편의시설

- 이론과 실무를 융합시킨 종합적인 교육 커리큘럼
- 분당이나 도문 등을 통한 방방방 커리어/영어선 수업
- 최고수준의 실무경력 교원을 통한 충실한 실무교육 제공
- 해외 교육기관과 MOU체결 및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 운영
- 강의실, 모의법정, 전공도서관, 전공열람실, 기숙사, 휴식공간 등 교육/편의시설 마련

■ 시험일

2020년 7월 19일(일) 09:00~15:50

■ 시험지역: 전국 9개 지구

- 서울, 수원, 부산,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춘천, 제주
- 전역한 지구에서만 응시가능(서울의 경우 1-3지역 선택)
- 시험 장소는 수험료 교부 기간(7월 9일~7월 19일)에 확인 가능

■ 원서접수

2020년 5월 26일(화) 09:00~6월 4일(목) 18:00

- 법학적성시험 홈페이지(www.leet.or.kr) 인터넷 접수
- 등록료 : 248,000원
- 무통장입금, 실시간 계좌이체, 신용카드로 납부
- 경제적 취약계층을 응시수수료 면제
-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의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의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 시험영역

교시	시험영역	문항 수	시험시간	비고
1	언어이해	30	70분	5지선다형
2	추리논증	40	125분	5지선다형
3	논술	2	110분	서답형

■ 25개교 법학전문대학원(입학비용 2,000원)

강원대(40)	건국대(40)	경북대(120)	경희대(80)	고려대(120)
동아대(80)	부산대(120)	서강대(40)	서울대(150)	서울시립대(50)
성균관대(120)	아주대(50)	연세대(120)	영남대(70)	원광대(60)
이화여대(100)	인하대(50)	전남대(120)	한북대(80)	제주대(40)
중앙대(50)	충남대(100)	충북대(70)	한국외대(50)	한양대(100)

■ 성적발표 : 2020년 8월 18일(화) 10:00

- 법학적성시험 홈페이지(www.leet.or.kr) 통해 성적확인

■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격

- 학사학위 취득자 또는 동등학위 소지자
- 2021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주요 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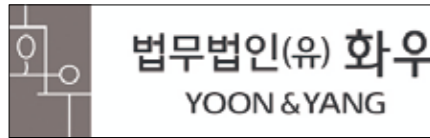
- 원서접수 : 2020년 10월 5일(월) 09:00~10월 8일(목) 18:00
- 합격자 발표 : 2020년 11월 30일(월)~12월 11일(수)
- 합격자 발표는 발표기간 범위 내에서 학교별로 상함

■ 문의 : 02)888-2031, 2034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학적성시험 홈페이지(www.leet.or.kr) 참조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THE ASSOCIATION OF KOREAN LAW SCHOOLS

법무법인(유) 화우 2020년 하계 법학전문대학원 인턴십 프로그램



- 인턴기간 : 추후 공지 예정
- 모집대상 : 국내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 재학생
- 모집인원 : 30명 내외
- 지원기간 : 2020.2.5.(수)~5.17(일) 23:59까지
- 지원방법 : 화우 홈페이지 > 인재영입 > 영입공고에서 지원서 작성 후 자기소개서, 성적증명서(학부, 로스쿨)와 함께 제출
- 선발통지 : 추후 공지 예정
- 문 의 : 02)6003-7842

2020 대한변협 학술논문상 논문공모

응모대상

2019.7.1.부터 2020.6.30.까지 작성 또는 발표되어

- 대한변협에 응모되거나,
- 법률가(개인, 학회, 학술단체, 대학 등 기관 포함)로부터 추천된 학술논문

응모자격

-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 법학연구생: 법학전문대학원생 및 일반대학원생

논문주제

- 법학 모든 분야 자유 주제
- 학술적 가치와 함께 실무적 응용성을 지닌 논문

응모일정

- 논문접수: 2020.6.1.~2020.6.30.
- 논문심사 및 결과발표: 2020.7.중
- 시상: 제29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2020.8.24. 예정)



Law Quiz



Q1 사법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사법작용은 헌법 그 자체에 의한 유보가 없는 한 오로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만이 담당할 수 있고, 행정심판은 어디까지나 법원에 의한 재판의 전심절차로서만 기능하여야 한다.
- ② 사법의 본질은 법 또는 권리에 관한 다툼이 있거나 법이 침해된 경우에 독립적인 법원이 원칙적으로 직접 조사한 증거를 통한 객관적 사실인정을 바탕으로 법을 해석·적용하여 유권적인 판단을 내리는 작용이다.
- ③ 사법절차를 특징지우는 요소로는 판단기관의 독립성·공정성, 대심적 심리구조,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보장 등을 들 수 있다.
- ④ 대법원에 대법관을 두며,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제외한 14명으로 한다.
- ⑤ 법관으로 하여금 증거조사에 의한 사실판단도 하지 말고, 최초의 공판기일에 공소사실과 검사의 의견만을 듣고 결심하여 형을 선고하라는 것은 입법에 의해서 사법의 본질적인 중요부분을 대체시켜 버리는 것에 다름 아니어서 권력분립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Q2 뇌물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청탁의 유무나 개개의 직무행위의 대가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는 없다.
- ② 뇌물죄의 직무에는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
- ③ 뇌물죄의 직무에는 현재 담당하고 있는 직무 외에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는 포함되지 않는다.
- ④ 형법 제132조(알선수뢰죄)상의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다"라고 함은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하는 행위로서 반드시 알선의 상대방인 다른 공무원이나 그 직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까지는 없다.

⑤ 도시계획시설 결정승인이 K시 시장의 소관사항이 아니고 그 상급승인기관인 L도시사의 소관사항임에도 불구하고 K시 도시계획 계장으로서 도시계획시설 승인신청서를 수리하여 결재를 거쳐 상급승인기관에 전달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甲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받은 경우, 甲에게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Q3 甲과 乙은 채권자가 입은 손해 1,000만 원에 대하여 부진정연대 채무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있다. 그런데 甲에 대해서는 채권자의 과실이 없지만, 乙에 대해서는 채권자의 과실이 30% 인정되었다. 이러한 사정 아래 甲이 400만 원을 변제하였을 경우, 乙이 채권자에 대해 부담할 채무는 얼마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1,000만 원
- ② 700만 원
- ③ 600만 원
- ④ 420만 원
- ⑤ 300만 원

※ 본 문항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하며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허락 없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2차적 저작물을 출판하거나 유포할 수 없습니다.

※ 문항출처: 2019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강원대학교
http://law.kangwon.ac.kr/



건국대학교
http://lawschool.konkuk.ac.kr/



경북대학교
http://lawschool.knu.ac.kr/



경희대학교
http://www.khls.ac.kr/



고려대학교
http://kulawschool.korea.ac.kr/



동아대학교
http://law.donga.ac.kr/



부산대학교
http://law.pusan.ac.kr/



서강대학교
http://lawschool.sogang.ac.kr/



서울대학교
http://law.snu.ac.kr/



서울시립대학교
http://lawschool.uos.ac.kr/



성균관대학교
http://sls.skku.edu/



아주대학교
http://lawschool.ajou.ac.kr/



연세대학교
http://lawschool.yonsei.ac.kr/



영남대학교
http://lawschool.yu.ac.kr/



원광대학교
http://lawschool.wonkwang.ac.kr/



이화여자대학교
http://law.ewha.ac.kr/



인하대학교
http://ls.inha.ac.kr/



전남대학교
http://www.jnu.ac.kr/



전북대학교
https://lawschool.jbnu.ac.kr/



제주대학교
https://lawschool.jejunu.ac.kr/



중앙대학교
http://lawschool.cau.ac.kr/



충남대학교
http://law.cnu.ac.kr/



충북대학교
https://lawschool.chungbuk.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http://law.hufs.ac.kr/



한양대학교
http://lawschool.hanyang.ac.kr/

법학전문대학원은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21세기를 이끌어 나갈 경쟁력 있는 법조인을 양성합니다.